표지면지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0	1 세제 ······· 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보완 및 조정3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제도 보완연
	금융·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보완 ·······7
	금 스크랩 매입자납부특례 도입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외국환업무 영위10
	(인포)긴급입찰사유의 구체적 예시11
	소액물품제조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 변경12
	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 상한율 상향13
0	2 산업(특허)·국세 ·······15
	지식산업센터 인정 요건 완화15
	KS인증기업의 비용부담 완화16
	법정인증 간 시험결과의 상호인정 의무화17
	건축물 증축·개축 등의 공사 시 공사계획 통보 및 안전조치 의무화 ·······18
	분할출원 가능 기간 확대19
	공지예외주장 보완 제도 도입20
	'취업 후 학자금' 상환방법 개선으로 상환편의 제공21
	여행자 휴대품 담배소비세 납부 절차 개선22
	개인투자조합 가입대상을 모태조합, 법인형엔젤 등으로 확대23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대폭 확대24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시행25
0	3 환경·기상·국토·해양 ···································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27
먹는물 수질기준에 우라늄 항목(30μg/L 이하) 추가 ······28
먹는샘물 수원지 세부주소(도로명, 건물번호) 표시29
화학사고 이력정보 공개 추진30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 사업장 신고제 도입31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공개33
국민의 건강을 고려한 '순자외선 지수' 대국민서비스 실시35
기상자료개방포털 운영으로 '기상자료 제공 창구일원화'36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에 대한 감시·경보 체계 발전 기반 마련 ······38
취약계층 안전·건강을 위한 한파특보 문자서비스 확대 운영40
태풍 정보 확대! '열대저압부 정보' 대국민서비스 실시41
고급골프장 등 민간시행자의 토지 수용 제한42
계획관리지역 내 일부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 ······43
도시계획의 기초조사로 재해취약성분석 포함44
한옥 등 국가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 기반 구축45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46
고속국도 휴게시설 주차장등에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의무설치48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상상대로」운영49
저가형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51
경량항공기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시기 명확화52
일선수협, 투명 경영 기반마련53
☆수산업, 어촌 정책의 기본 방향을 규정한5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시행☆54
어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어촌관광휴양사업 추가55
어업법인이 설립, 변경 등기를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기 사실 통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56
면허어업권자 주소변경 신고의무 규제 폐지57
불법어업 행위자 면세유 공급 중지58
☆국적 크루즈선사 지원 등을 위한 제도 시행으로59
크루즈산업 활성화 초석 마련☆59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신설에 따른 다양한 마리나 서비스업	
	활성화	··60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시행	61
	연안여객운송사업의 민간 자율·경쟁 토대 마련	62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 강화	63
	중대 해양사고 발생선박 정보공표	64
0	4 복지·여성·고용노동 ····································	65
	임상시험 거친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65
	3대 비급여 개선	68
	어르신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70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7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7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7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의무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 운영·관리 강화 ······	77
	난임부부에게 심리 및 의료상담서비스 제공	79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81
	광역치매센터 확충	82
	보육비용 신청 정보 사전 고지 제도 시행	83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84
	18세 미만 미성년 근로자 사업장가입 당연적용	85
	국민연금 수급 연기(연기연금)의 선택권 확대	86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 개선	··87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확대시행	88
	「양성평등기본법」7월 1일부터 시행(핵심)	89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실시결과 공개 의무화(핵심)	9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0개소 신규 개소	93
	청소년지도사·산달사 자견취들 요거 강하	9/ı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95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요건 강화96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97
	사업주 인센티브가 강화됩니다97
	임금체불근로자 지원 강화98
	산업안전보건분야 예방·기획 감독에 주력99
0.	5 통일·외교 ···································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개선101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사업(미래행복통장) 실시103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방식 개선104
0	6 보훈·국방·병무 ·······105
	보훈단체 수익사업 확대 및 관리 감독 강화105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서 우선 구매(중요)107
	병사 수신용 휴대폰 보급으로 사회와의 소통기회 확대(중요)108
	시설관리 등 부대 지원업무에 민간자원 적극 활용109
	예비군 사격훈련 체계 개선110
	자발적인 성과를 유도하는 자율참여형 예비군 훈련 확대11
	국방연구개발 지식재산권에 대한 민간 권한 확대112
	첨단 민간 우수기술을 활용, 국방 핵심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연구기관과의
	수의계약 시행113
	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 일원화에 따른 민원편의성 증진114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제도 시행115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 의무화 ······117
	약학대학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 상향 조정118
0	7 문화·통신 ···································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의무화 및 안전관리 강화119



● 야영장업 등록(~8.3일), 야영장업 안전·위생기준 8.4일부터 시행 ·······121
●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시행 ······123
●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이 보다 강화됩니다125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시행(*15.11.19)으로126
●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126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시행(*15.11.19)으로 문화산업으로서의 체계적·통합적
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128
●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법적 근거 마련129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130
●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로 공공정보화사업의 민간침해 방지132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발주기술지원서비스 제공133
● 다양한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사업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통합·체계화
134
● SW창의캠프를 확대 시행,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SW교육 기회를 제공 ······135
●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진입규제 완화 및136
●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가족관계 확인 절차 간소화137
●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자 의무 강화138
08 농식품·식약139
● 농어촌 민박 조식 제공 허용 및 서비스·안전 교육 실시 ·······139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시행(인포그래픽)141
●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범위 확대142
● * 국산 미곡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신설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신설 ······143
◉ *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면세유에서 경유 제외144
● 2015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인포그래픽) ······145
● 콩·양파·포도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 시범사업 실시 ······146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개정·시행 ······147
▲ 농업부조금으로 취득하 재사은 부기등기(附記各記)하여 관리148

	「농식품·중소기업 전용홈쇼핑」개국 ······149
	1·2등급 의료기기 위탁 신고·인증제 도입 ······150
	주류제조업체 2015. 7. 1일부터 「식품위생법」시설기준 준수의무적용152
	인체조직 전주기 프로세스 통합추적관리152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 영업자 및 기타식품판매영업자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 확대153
	목재·제지 산업 분야 KS 표준 업무, 산림청 이관154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개발 제한 규정 폐지155
	임업용산지에서의 산림레포츠시설 등 설치 허용156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운영157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제도 신설159
	소나무재선충병 관리강화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160
0	9 인사·법무 ···································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맞춤형 정책161
	민간인만 임용 가능한 개방형직위 운영 등 공직 개방성·전문성 확대 ······162
	국가직 공채 면접시험 대폭 강화163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제도 도입165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실시166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cdot 민사집행법 개정,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저당권 설정 가능 \cdots 167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한 친권 정지·제한 제도 도입168
	강력사범에 대한 경찰과의 정보공유 강화169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 기획재정부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보완 및 조정3
2.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3.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제도 보완6
4.	금융·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보완 ······7
	금 스크랩 매입자납부특례 도입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외국환업무 영위10
	(인포)긴급입찰사유의 구체적 예시11
	소액물품제조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 변경12
9.	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 상한율 상향13
Q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산업센터 인정 요건 완화15
	KS인증기업의 비용부담 완화16
	법정인증 간 시험결과의 상호인정 의무화17
4.	건축물 증축·개축 등의 공사 시 공사계획 통보 및 안전조치 의무화18
Q	특허청
1.	분할출원 가능 기간 확대19
2.	공지예외주장 보완 제도 도입20
Q	국세청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방법 개선으로 상환편의 제공21

1. 여행자 휴대품 담배소비세 납부 절차 개선22 중소기업청 2.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대폭 확대24 3.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시행25 ○ 환경부 1.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27 2. 먹는물 수질기준에 우라늄 항목(30µg/L 이하) 추가 ········28 4. 화학사고 이력정보 공개 추진30 5.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 사업장 신고제 도입31 ○ 기상청 1. 국민의 건강을 고려한 '순자외선 지수' 대국민서비스 실시 ………………………………………………35 2. 기상자료개방포털 운영으로 '기상자료 제공 창구일원화' …………………36 3.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에 대한 감시·경보 체계 발전 기반 마련 ·······38 5. 태풍 정보 확대! '열대저압부 정보' 대국민서비스 실시41 국토교통부 1. 고급골프장 등 민간시행자의 토지 수용 제한42

○ 관세청



3.	도시계획의 기초조사로 재해취약성분석 포함44
4.	한옥 등 국가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 기반 구축 ······45
5.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46
6.	고속국도 휴게시설 주차장등에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의무설치 …48
7.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상상대로」운영49
8.	저가형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51
9.	경량항공기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시기 명확화52
Q	해양수산부
1.	일선수협, 투명 경영 기반마련53
2.	☆수산업, 어촌 정책의 기본 방향을 규정한54
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시행☆ ······54
4.	어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어촌관광휴양사업 추가55
5.	어업법인이 설립, 변경 등기를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기 사실 통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56
6.	면허어업권자 주소변경 신고의무 규제 폐지57
7.	불법어업 행위자 면세유 공급 중지58
	☆국적 크루즈선사 지원 등을 위한 제도 시행으로
9.	크루즈산업 활성화 초석 마련☆
10.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신설에 따른 다양한 마리나 서비스업
	활성화60
11.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시행61
12.	연안여객운송사업의 민간 자율·경쟁 토대 마련 ······62
13.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 강화63
14.	중대 해양사고 발생선박 정보공표64
Q	보건복지부
1.	임상시험 거친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2.	3대 비급여 개선68
3.	어르신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70
4.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71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73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국민행복카드로 통합75
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의무화76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 운영·관리 강화 ······77
	난임부부에게 심리 및 의료상담서비스 제공79
10.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81
11.	광역치매센터 확충82
12.	보육비용 신청 정보 사전 고지 제도 시행83
13.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84
14.	18세 미만 미성년 근로자 사업장가입 당연적용85
15.	국민연금 수급 연기(연기연금)의 선택권 확대86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 개선87
17.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확대시행88
Q	여성가 족 부
	「양성평등기본법」7월 1일부터 시행(핵심)89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실시결과 공개 의무화(핵심)9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0개소 신규 개소93
	청소년지도사·상담사 자격취득 요건 강화94
5.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95
Q	고용노동부
1.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요건 강화%6
2.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97
3.	사업주 인센티브가 강화됩니다97



4. 임금체불근로자 지원 강화 ······98 5. 산업안전보건분야 예방·기획 감독에 주력 ·····99
◎ 통일부
1.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개선 ·······101 2.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사업(미래행복통장) 실시 ······103
의교부
1.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방식 개선104
☑ 보훈처
1. 보훈단체 수익사업 확대 및 관리 감독 강화105
☑ 국방부
1.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서 우선 구매(중요) 107 2. 병사 수신용 휴대폰 보급으로 사회와의 소통기회 확대(중요) 108 3. 시설관리 등 부대 지원업무에 민간자원 적극 활용 109 4. 예비군 사격훈련 체계 개선 110 5. 자발적인 성과를 유도하는 자율참여형 예비군 훈련 확대 111
○ 방위사업청
1. 국방연구개발 지식재산권에 대한 민간 권한 확대

◎ 병무청

1.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제도 시행115
2.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 의무화 ······117
3.	약학대학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 상향 조정118
	문화체육관광부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의무화 및 안전관리 강화119
2.	야영장업 등록(~8.3일), 야영장업 안전·위생기준 8.4일부터 시행 ······121
3.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시행123
4.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이 보다 강화됩니다125
5.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시행(*15.11.19)으로126
6.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126
7.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시행('15.11.19)으로 문화산업으로서의 체계적·통합적
	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128
8.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법적 근거 마련129
	미래창조과학부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130
2.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로 공공정보화사업의 민간침해 방지132
3.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발주기술지원서비스 제공133
4.	다양한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사업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통합·체계화
	134
	방송통신위원회
1.	
	SW창의캠프를 확대 시행,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SW교육 기회를 제공135
2.	SW장의캠프를 확대 시행,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SW교육 기회를 제공135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진입규제 완화 및136



4.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자 의무 강화138
Q	농림축산식품부
1.	농어촌 민박 조식 제공 허용 및 서비스·안전 교육 실시139
2.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시행(인포그래픽)141
3.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범위 확대142
4.	* 국산 미곡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신설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신설 ······143
5.	*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면세유에서 경유 제외144
6.	2015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인포그래픽) ······145
7.	콩·양파·포도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 시범사업 실시146
8.	「해외농업 · 산림자원 개발협력법」개정 · 시행147
9.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 관리148
10.	「농식품·중소기업 전용홈쇼핑」개국 ······149
	식품의약품안전처
1.	1·2등급 의료기기 위탁 신고·인증제 도입 ······150
2.	주류제조업체 2015. 7. 1일부터 「식품위생법」시설기준 준수의무적용152
	인체조직 전주기 프로세스 통합추적관리152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 영업자 및 기타식품판매영업자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 확대153
Q	산림청
1.	목재·제지 산업 분야 KS 표준 업무, 산림청 이관154
2.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개발 제한 규정 폐지155
3.	임업용산지에서의 산림레포츠시설 등 설치 허용156
4.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운영157

5.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제도 신설159
6.	소나무재선충병 관리강화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160
	인사혁신처
1.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맞춤형 정책161
2.	민간인만 임용 가능한 개방형직위 운영 등 공직 개방성·전문성 확대 ······162
3.	국가직 공채 면접시험 대폭 강화163
Q	법무부
Q	법무부
	법무부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제도 도입165
1.	
1. 2.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제도 도입165
1. 2. 3.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제도 도입 ·······165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실시 ······166



목 차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14년 하반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u>요</u> 제도

1 세제	3
2 산업(특허)·국세 ······	15
3 환경·기상·국토·해양	 27
4 복지·여성·고용노동	65
5 통일·외교	101
6 보훈·국방·병무	105
7 문화·통신	119
8 농식품·식약	139
9 인사·법무	161

01 세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보완 및 조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1)

-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근로자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보다 적은 금액(80%) 또는 많은 금액(120%)으로 원천징수를 희망하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희망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 전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변경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변경신청이 있기 전에는 변경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이 계속 적용됩니다.
 - *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다른 원천징수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음
-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였습니다.
 -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동일한 특별공제 기준을 적용하였던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분리하여 1인 가구에 대한 별도의 특별공제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였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15.6.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보완 및 조정

- 추진배경 : 근로자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제도 개선
- 주요내용
- 원천징수방식 선택 허용(80%, 100%, 120%)
- 1인 가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 시 행 일 : 2015.7.1.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1)

- 다음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후 다음날까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①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 ② 개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 불이행시 가산세(공급가액×0.1%~1%)가 부과됩니다.
 - 위 ①의 사업자: '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위 ②의 사업자: '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전자계산서를 자진 발급하는 경우 '15.1.1. 이후 거래분부터 발급건당 200원(연간 100만 원 하도)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안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 추진배경 :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의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다음의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의무화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자
- 의무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자진발급시 건당 200원 세액공제
- 시 행 일 : 2015.1.1.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제도 보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213)

- 자경농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8년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제도와 **일치**시켰습니다.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에서 100% **감면**으로 변경하고 **감면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 * (감면 한도)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 과세특례 대상 농업인 요건에서 경작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 *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 영농조합법인만 적용 → 농업회사법인 추가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경우 통산 (경작기간 계산방법 보완)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농업회사법인 등에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제도 보완

- 추진배경 : 자경농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사 제도와 일치
- 주요내용
 - ① 감면 한도 등 규정
 - 현행 : 양도세 면제
 - 개정 : 양도세 100% 감면(감면한도: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 ② 과세특례 대상 농업인 요건 정비
 -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 영농조합법인만 적용 → 농업회사법인 추가
 -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경우 통산
 - (경작기간 계산방법 보완)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시 행 일 : 2015.7.1.

금융 · 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보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232)

- 유사용역과의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본질적인 금융·보험용역 성격 외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과세로 전환된 주요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예수(保護預受), 투자자문업, 연금계리용역, 보험계리용역,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운용하는 신탁업 및 투자일임업
 - 개정내용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수정·변경·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금융·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보완

- 추진배경 : 유사 금융보험 용역과의 과세형평 제고
- 로 주요내용
 - 본질적인 금융·보험용역 성격 외의 용역 과세 전환
 - 보호예수
 - 투자자문업
 - 연금계리용역
 - 보험계리용역
 -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운용하는 신탁업 및 투자일임업
- 시행일 : 2015.7.1

금 스크랩 매입자납부특례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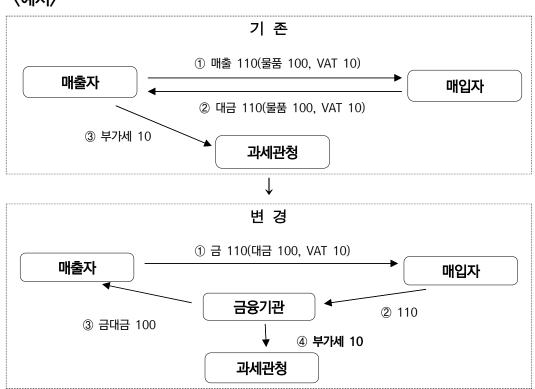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233)

- '폭탄사업자' 등에 의한 탈세 및 선의의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 스크랩 매입자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사업자
- 금 스크랩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금융기관이 해당 부가가치세를 직접 과세 관청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가능성을 차단** 하였고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금 스크랩 매입자납부특례

- 추진배경 : 금거래 관련 세수탈루 방지 및 금 거래질서 확립
- **주요내용**
 - 금 스크랩 거래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입금하여 금융기관이 직접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입금하도록 하는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도입
- 시행일 : 2015.7.1

〈예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외국환업무 영위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044-215-4751)

- ► 우리 PG 社들도 국경간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해외 온라인 쇼핑 (直購)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온라인 판매(逆直購)에 있어 간편성과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 * PG(Payment Gateway) 온라인 거래에 따른 지급·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지급·결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신용카드사와 다름), 현재 54개사가 금융위에 등록
 - 우리 국민들이 해외 온라인 쇼핑("직구")함에 있어 PG社가 매개된 경우 국내 전용카드 로도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 현행 : Visa, Master 등 글로벌카드로만 결제 가능
 - 개정 : 국내 전용 카드로도 결제 가능
 - 그간 해외 결제사들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못했던 우리 중소 쇼핑몰들의 해외판매 ("역직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 현행 : 해외 결제사(Alipay 등)와 직거래계약을 체결한 일부 국내 대형쇼핑몰만 판매 가능
 - 개정 : 국내 PG사가 대표가맹점으로서 중소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판매 가능
 -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5.7.1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인포)긴급입찰사유의 구체적 예시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044-215-5216)

- 국가계약에서 입찰공고기간을 단축(7~40일 → 5일)할 수 있는 **긴급입찰사유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법령에 명시되어 발주기관의 자의적 기간단축이 제한됩니다.
 -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재해예방·** 복구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 긴급입찰여부를 발주기관이 스스로 판단

- 개정 : 법령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시 긴급입찰 가능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긴급입찰사유 법령화로 자의적 입찰공고기간 단축 제한 보도자료

긴급입찰사유의 구체적 예시

- 추진배경 : 국가계약 참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 **주요내용**
 - 긴급입찰사유의 구체적 사례를 국가계약법령에 명시
 -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긴급한 행사·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
- 시행일: 2015.6.22

소액물품제조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 변경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044-215-5216)

- 국가계약에서 2억1천만원 미만의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됩니다.
 - 적격심사제 도입으로 과도한 저가투찰이 방지되고 **입찰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적격심사제 :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 현행 : 최저가낙찰제 - 개정 : 적격심사제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긴급입찰사유 법령화로 자의적 입찰공고기간 단축 제한 보도자료

소액물품제조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 변경

- 추진배경 : 과도한 저가투찰 방지
- 주요내용
 - 2억1천만원 미만의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변경(최저가낙찰제 → 적격심사제)
- 시행일 : 2015.6.22.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 상한율 상향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044-215-5216)

■ 국가계약 서비스분야 계약에서 현행 5%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관리비율 상한율이 6개 분야로 세분화된 업종별로 실제값을 반영한 상한율(5~10%)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구 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물관리 경비 및 청소	행사관리 및 사업지원	여행·숙박 ·운송 및 보험	장비 유지보수	기타
상한율 (%)	10	9	8	5	10	6

※ 일반관리비율 : 일반관리비(임원급료, 사무실임차료, 세금 등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부문의 비용)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 현행 : 모든 서비스의 일반관리비율 상한율 동일(5%)

- 개정 : 6개 서비스분야별 일반관리비율 상한율 각각 규정 (5~10%)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긴급입찰사유 법령화로 자의적 입찰공고기간 단축 제한 보도자료

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 상한율 상향

- 추진배경 : 서비스분야의 비용부담 감소
- **주요내용**
 - 서비스분야를 6개분야로 세분화하고 분야별로 실제값을 반영한 일반관리비율 상한율 적용
- 시행일 : 2015.6.30.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02 산업(특허)·국세

지식산업센터 인정 요건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044-203-4431)

- 금년 하반기부터 건축물이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공장)**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완화** 됩니다.
 - 지금까지는 지식산업센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에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어야 했으나,
 - 관련 법령인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장,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사업장이 합하여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으면 지식산업센터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 * (종전) 공장이 6개 이상이어야 함

 ⇒ (개선) 공장 + 지식산업사업장 + 정보통신사업장 = 6개 이상이어야 함
- 이러한 제도 개선의 결과, 지식산업센터에 제조업(공장)에 더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의 입주도 활발해지면서 산업간 융합・연계가 촉진될 전망입니다.
 - ☞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법령검색)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6제2호)

지식산업센터 인정 요건 완화

- ➡ 추진배경 : 산업간 융합·연계효과 촉진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인정 요건 완화
- **주요내용**
 - ① 공장과 지식산업의 사업장,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을 합하여 6개 이상의 업체가 입주할 수 있으면 지식산업센터로 인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
- 시행일 : 2015년 6월말~7월초 (개정안 6.25일 국무회의 상정)

KS인증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과 (☎ 043-870-5348)

- KS인증기업이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크게 완화될 예정입니다.
 - KS 인증기업들은 인증 유지를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받고 이와 별개로 완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해 자체 제품시험을 추가로 실시해 왔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KS 인증 정기심사시 제품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또한, KS 인증기업의 품질관리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품질교육 이수시간이 현행 3일(20시간)에서 2일(16시간)로 축소되었습니다.
 -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을 위한 KS인증제도의 개선
- **주요내용**
 - ① 정기심사 시 제품심사를 폐지하고 공장심사만 받도록 함
 - ② 기업 품질관리담당자 표준교육 이수시간 축소(20시간→16시간)
- 시행일 : 2015년 7월 7일

법정인증 간 시험결과의 상호인정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산업진흥과 (☎ 043-870-5507)

- 2015년 7월 1일부터 법정인증 간 시험결과가 상호 인정되어 **중복시험에 따른 비용 문제가** 해소됩니다.
 - 과거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인증제도 간에 동일한 시험기준이나 상위 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기업들이 동일한 시험에 대해 이중으로 시험비용을 지출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기존 인증제도의 제품평가 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동일 한 시험기준 또는 상위 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결과의 상호인정을 의무화하여 해당 시험 을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전기용품·공산품의 경우 품목당 인증비용은 52%, 취득기간은 49% 감소하는 등 기업들이 인증을 취득하는 비용과 시간이 대폭 경감될 전망입니다.
 - ☞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법령검색)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개정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불필요한 기업의 중복시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법정인증제도 간에 시험결과 의 상호인정을 의무화
- **주요내용**
 - ① 동일한 시험기준 또는 상위 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결과의 상호인정을 의무화하여 해당 시험을 생략
- 시행일 : 2015년 7월 1일

건축물 증축·개축 등의 공사 시 공사계획 통보 및 안전조치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044-203-5132)

- 2015년 7월 1일부터 건축물 공사 시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 (건축물 공사시 안전조치) 건축물 증축·개축 등의 공사시 공사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 자에게 공사 시작 7일전까지 공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하고,
 -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과태료) 건축물 공사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아니한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에게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또한, 건축물 공사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건축물 공사의 시 행자에게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예산/법령〉최근개정법령/입법예고

「도시가스사업법」제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의 중축·개축 등 공사 시 도시가스시설의 손상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
- **주요내용**
 - ① 건축물 공사시 공사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 시작 7일전까지 공사계획을 통보
 - ②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안 전조치
 - ③ 건축물 공사시 공사계획 통보 및 안전조치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 시행일 : 2015년 7월 1일

분할출원 가능 기간 확대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042-481-5397)

-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에 추가로 분할출원할 수 있게 하여 특허출원 발명의 추가 권리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등록결정 이후 표준 결정 등에 따라 추가 권리화 필요가 있더라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분할출원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존재하였으나,
 - 2015년 7월 29일부터 특허등록 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최대 3개월)에 추가로 분할출 워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분할출원의 일반요건인 **출원 계속 요건(설정등록일 이전)으로 제한**됩니다.
 - 분할출원 가능 기간 확대는 2015년 7월 29일 이후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취소 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 재심 심결 포함) 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됩니다(실용신안 동일).
 - ☞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정보마당〉뉴스 및 공지〉KIPO News〉2015년 지식재산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분할출원 가능 기간 확대

- 추진배경 :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에 추가로 분할출원 가능
- **주요내용**
 - ① (원칙) 특허등록결정 등본 송달받은 날부터 설정등록 이전(최대 3개월)까지 가능
 - ② (**제한**) 출원 계속 요건 → 설정등록일까지로 제한
- 시행일 : 2015년 7월 29일*
 - * 시행일 이후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 재심 심결 포함) 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실용신안 동일)

공지예외주장 보완 제도 도입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042-481-5397)

- '출원 후에도'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여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공지예외주장이 '출원 시에만' 가능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라도 출원 시 공지 예외주장을 누락하면 특허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으나.
- 2015년 7월 29일부터 출원 이후에도 명세서 보정 가능 기간 및 특허결정 후 설정등 록 이전(최대 3개월)에는 공지예외주장을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 공지예외주장 보완 제도는 2015년 7월 29일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됩니다(실 용신안 동일).
- ☞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정보마당〉뉴스 및 공지〉KIPO News〉2015년 지식재산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공지예외주장 보완 제도 도입

- 추진배경 : 특허출원 이후에도 일정기간내 공지예외주장 보완 가능
- **주요내용**
 - ① (원칙)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 취지 기재, 30일 이내 증명 서류 제출
 - ② (예외) 명세서 보정 가능 기간 및 설정등록 이전(최대 3개월)까지 보완 가능 (설정등록 이후에는 불가)
- 시행일 : 2015년 7월 29일*
 - * 시행일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실용신안 동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방법 개선으로 상환편의 제공

국세청 학자금상환과 (☎ 044-204-3873)

- 「취업 후 학자금(든든학자금)^{*}」을 상환할 때 종전에는 회사가 매월 원천공제하여 상환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1년분을 선납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신고납부하여 상환하던 것을 간편한 고지납부로 전환하였습니다.
 - ※ 대학생이 재학중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에서 '든든학자금'을 대출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취업하여 상환(국세청에서 상환업무 수행)하는 제도
 - 선납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통지를 생략하여 중소업체의 상환업무 부담을 줄이고 채무자의 대출경력이 회사에 공개되는 고충도 해결 하였습니다.
 - 자영업자는 복잡한 학자금 상환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이미 신고된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고지된 금액을 납부만 하도록 하여 상환절차가 간편해지고 무신고시 과태료 부담도 없어졌습니다.
 - (참고) 국세청 누리집〉국세청 뉴스〉보도자료〉국세청,「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으로 상환편의 제공

2015년도 개선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방법

- ▼진배경 : 채무자들의 대출경력이 공개되는 고충을 해결하고 상환편의 제공
- **주요내용**
 - ①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1년분 원천공제 상환액 선납 가능(전액 또는 2회 분할)
 - ② 학자금 상환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간편한 고지납부로 전환
- 시행일 : 2015년 6월

여행자 휴대품 담배소비세 납부 절차 개선

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481-7872)

- 관세청과 행정자치부의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여행자 휴대품 담배소비세의 납부 방식이 보다 편리하게 개선됩니다.
 - 담배소비세의 징수권자는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그간 담배를 휴대한 납세자는 담배 소비세를 지자체장에게 별도로 납부한 후 그 사실을 세관장으로부터 확인 받아야만 담배를 반입 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행정자치부와 전산망을 연계하여 세관장이 직접 전자납부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였고,
 - 이를 통해 납세자는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현장에서 담배소비세를 즉시 납부하고 담배를 반입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이러한 개선 방식은 우선적으로 휴대품 담배소비세에 적용하고, 추후 우편물로 반입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또한, 관세청은 국세와 지방세 간 이원화된 납부체계로 인한 국민불편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자 관세법 및 지방세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휴대품 및 우편물 담배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지방세 포함)이 통관단계에서 한번에 일괄징수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개인투자조합 가입대상을 모태조합, 법인형엔젤 등으로 확대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 042-481-4487)

- 개인투자조합에 정부 재원(중소기업모태조합)의 출자와 기관형 투자자(법인형엔젤)의 참 여를 가능하게 하여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개인투자조합은 개인들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2015 년 11월부터 정부나 기관투자자도 참여하여 투자재원을 출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기존 조합원의 환금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한국벤 처투자조합(KVF)도 조합 가입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 2015년 내에 중소기업모태조합에서 출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고 2016년에는 조합 결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가입대상 확대

- 추진배경 : 모태조합, 법인형 엔젤 등의 개인투자조합 가입을 통해 벤처·창업기업 투자재원 확대
- **주요내용**
 - 개인투자조합 가입대상 확대
 (개인 → 개인,모태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법인형 엔젤)
- 시행일 : 2015년 11월 19일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대폭 확대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53)

-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부동산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술·전문지식 등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1인 중심기업"으로, 지금까지 지원대상 업종으로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위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 2015년 8월부터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하여, 새롭게 부각되는 유망 분야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1인 창조기업은 경영애로 해소 및 기업이 보유한 지식(산출물)에 대한 사업화 등을 위해, 사무공간 및 멘토링, 마케팅, 기술개발 및 정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참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대폭 확대

2015년도 1인 창조기업 지원 업종 확대

- 추진배경 : 산업간·업종간 융복합을 통해 창조성 기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유망한 새로 운 업종이 출현하는 산업현실 반영
- 주요내용 : (기존) 434개 업종, 92천개 →(개선) 620여개 업종, 252천개
- **시행일** : 2015년 8월 4일 (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개정중)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시행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8923)

- 경영여건이 열악한 도시형소공인 지원분야에 중점을 둔「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 시행중입니다.
 - 기존에는 소상인과 소공인을 통합지원하여 소공인에 대한 지원기반 등이 미비하였으나 2015년 5월 29일부터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법령 시행으로 소공인 지원에 특화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시범운영되었던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15년 25개로 확대설치 되었으며, 소공 인 성장희망사다리 사업예산을 신규로 확보하여 **마케팅, 판로개최 등을 지원**합니다.
 - 2016년부터 도시형소공인 인력양성, 환경개선, 기술개발 등 소공인 지원 전분야에 대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의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 추진배경 :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 **주요내용**
 - ①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②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인프라 구축 지원
 - ③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업종별 특화사업 지원
 - ④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 시행일 : 2015년 5월 29일

03 환경·기상·국토·해양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 044-201-6668)

- 하수도요금 등과 중복부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5년 7.1일부터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이 폐지됩니다.
- 지금까지 연면적 160㎡(약 48평) 이상인 시설물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왔으나, 2015년 7. 1일부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함에 따라 국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도 상반기분(1~6월)까지 부과되며, 하반기분 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현행법령〉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설물의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 추진배경 : 하수도요금 등과의 중복부과 문제 해소 등을 위하여 '15.7.1일부터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상반기 부과분은 제외)
- **주요내용**
 - ① 시설물에 부과하였던 환경개선부담금을 2015년 7.1일부터 폐지함에 따라 국민의 부담을 경감
- 시행일 : 2015년 7월 1일

먹는물 수질기준에 우라늄 항목(30µg/L 이하) 추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044-201-7188)

- '먹는샘물 및 샘물(먹는샘물의 원수)' 등의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하여 먹는샘물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 * 우라늄 수질기준 적용대상 : 먹는샘물, 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물공동시설
- 이번에 추가되는 우라늄 수질기준 값은 업계 설명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세계 보건기구(WHO) 권고치, 미국의 수질기준 등과 같이 '30//g/L 이하'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 향후, 우라늄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취수정은 먹는샘물 생산용으로 개발 자체가 금지됩니다.
- 금회 우라늄 수질기준 추가함에 따라 국내 먹는샘물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아울러, 장기적으로 먹는샘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게 될 것입니다.
- ☞ (참고) 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먹는샘물 수질기준에 우라늄(30ょ)/L 이하) 추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개정

- 추진배경 : 먹는물(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먹는염지하수)의 안전성 강화
- **주요내용**
 - ① 우라늄 항목 수질기준 추가(30 µg/L)
- 시행일 : 2015년 7월중(잠정, 규제심사 예정)

먹는샘물 수원지 세부주소(도로명, 건물번호) 표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044-201-7188)

- 소비자가 먹는샘물 수원지에 대한 혼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7.1일부터는 먹는샘물 의 수원지 세부주소가 표시됩니다.
- 단일 시·군 내 복수의 제조업체를 구별할 수 있도록 **주 표시면의 제품명 하단에 수원** 지 정보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 대표호정(샘물 개발허가 취수량이 최대인 호정)의 위치를 도로명, 건물번호(도로명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동/리, 지번)까지 표시
 - 반대로, 각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 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읍·면까지는 제품명 활자크기(가장 큰 활자크기 기준)의 1/2 이상 크기로, 나머지 주소는 1/6이상 크기로 표시됩니다.
- 앞으로는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안전하게 먹는샘물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시행

- 추진배경 : 먹는샘물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안전한 먹는물 관리 강화
- 주요내용
 - ① 먹는샘물 수원지 위치, 업소 소재지 도로명 주로로 표기
 - ② 수원지는 제품명 하단에 도로명, 건물번호(도로명 주소가 없는 경우 동/리, 지번)표시
 - ③ 읍면까지는 제품명 활자크기의 1/2, 도로명, 건물번호는 1/6크기로 표시
- 시행일 : 2015년 7월 1일

화학사고 이력정보 공개 추진

환경부 화학안전과 (☎ 044-201-6834)

- '15.7.21일부터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화학사고 이력정보를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15.1.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사고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사고정보 통합시스템(CATS)과 사고정보대응시스템(CARIS)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사고대응 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될 뿐 사고 발생지역 거주 주민을 비롯 한 대중에게는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
- 법 시행 이후에는 화학사고 이력을 포함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취합해 화학물질 종합정 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대상 정보에 화학사고 발생 이력을 포함한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 화학물질의 안전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 과 및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현행법령〉화학물질관리법

화학사고 이력정보 공개 추진

- 추진배경 :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 강화
- **주요내용**
 - ①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대상 정보에 화학사고 발생 이력 포함
 - ②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의무 명시적으로 부과
 - ③ 시스템 상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근거 마련
- 시행일 : 2015년 7월 21일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 사업장 신고제 도입

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201-6905)

- '15.7.2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상 비산배출저감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상시설에 대한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 ※ 공정 및 설비 등에서 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비산)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
- 「대기환경보전법」개정·시행('14.7.21)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사업장은 대상시설의 현황자료와 관리대상물질의 취급량, 비산배출시설 관 리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관할 지역 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 이후에는 시설관리기준 이행 보고서를 매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고, 매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되며, 관할 환경청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수시로 대상시설을 점검도 하게 됩니다.
- 올해는 원유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합성고무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등 6개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비산배출저 감제도를 시행하고, 내년부터 연차별로 대상업종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비산배출 저감 시설관리기준의 이행을 높이기 위해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무상 기술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비산배출 저감 시설관리기준에 대한 세부이행지침을 담은 설명서를 환경부 누리집 (www.me.go.kr)에도 게재했으며, 하반기 중으로 세부이행 방법에 대한 사업장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자료,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 사업장 신고제 도입"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제도 신고제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비산배출저감제도 적용받는 대상시설에 신고제 도입

로 주요내용

- ① 비산배출 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에게 신고/변경신고 의무 부과
- ② 신고/변경신고 한 사업자는 시설관리기준 준수 의무 부과
- ③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도록 의무부과
- ④ 비산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명령 조항 신설
- ⑤ 위 개정 사항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 시행일 : 2015년 7월 21일(법제처 심사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공개

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201-6907)

- '15.7.21일부터 **굴뚝자동측정기기(TMS)에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굴뚝 원격 감시체계 관제센터 **홈페이지(www.cleansys.or.kr)를 통해 공개**됩니다
- 공개항목은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를 포함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에서 측정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연간배출량입니다.
-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인터 넷을 통하여 바로 알 수 있게 되어, 건강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의 알권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사업장의 대기오염배출량을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사업주에게도 배출허용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유도하면서 시설개선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투자와 노력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현행법령〉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여 지역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주요내용
- ① 사업장명, 소재지
- ② 대기오염물질별 연간 배출량
- 시행일 : 2015년 7월 21일(법제처 심사 중)

국민의 건강을 고려한 '순자외선 지수' 대국민서비스 실시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변화감시센터 (☎ 070-7850-7103)

- 자외선이 피부암, 피부노화 등 부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비타 민 D 생성에 필요한 자외선 노출의 최소 시간을 순자외선지수로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인체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는 햇빛에 노출되면 자연적으로 생성되거나 특정 음식을 먹어야만 흡수가 됩니다. 또한, 햇빛 노출이 부족해 비타민D가 결핍되면 뼈 건강과 심장 질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이에 기존 자외선지수에 비타민D 1,000IU*를 생성시킬 수 있는 최소 자외선 노출시간을 적용한 순자외선지수를 기상청 누리집, 기후변화정보센터(CCIC)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합니다.
 - ※ 1IU = 비타민D 0.025µg
- 기존 자외선 위험 노출 정보뿐 만아니라 **자외선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자외선지수 대국민서비스 실시

- 추진배경 : 자외선 노출이 인간건강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순자외선지수를 통해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비타민D 생성에 필요한 자외선 노출의 최소 시간 서비스
- 시행일 : 2015년 11월

기상자료개방포털 운영으로 '기상자료 제공 창구일원화'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02-2181-0883)

-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이용하기 쉬운 기상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로 민간활용 을 확대해 나갑니다.
 - 하반기에 기상자료개방포털(data.kma.go.kr)을 정상운영(8월)하면, 포털에서 개방형 자료형식으로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기상자료 수수료 고시(8월 예정)를 통해 온라인 수수료 무료화 이후 기상자료개방포털을 일반국민 대상으로 오픈 예정
 - ※ 지상(지상, AWS)·해양(부이, 등표)·고층(레윈존데) 기상관측자료 등 8종 자료 제공



- 기존의 기상자료 Open-API 서비스 6종에서 추가로 15종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기존(6종): 예보구역정보조회, 동네예보정보조회, 중기예보정보조회, 보건기상지수조회, 산업기상지수조회, 생활기상지수조회

※ 하반기 확대(15종): 기상기본정보조회, 일기도정보조회, 낙뢰정보조회, 레이더영상정보조회, 위성영상 정보조회, 해양정보조회, 고층정보조회, 황사정보조회, 지상정보조회, 지진정보조 회, 태풍정보조회, 기상특보정보조회, 디지털예보정보조회, 동네예보통보문정보조 회, 자동기상관측조회

기상자료 제공 창구 일원화

- 추진배경 : 국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 쉽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주요내용
 - ① 기상자료개방포털 운영(data.kma.go.kr)
 - ② 제공하는 자료 형식을 더욱 개방된 형태로 서비스(데이터 오픈포맷 txt,pdf→csv)
 - ③ 기상자료 Open-API 서비스 확대(공공기관 대상 6종→일반국민 대상 15종)
- 시행일: 2015년 8월

지진 · 지진해일 · 화산활동에 대한 감시 · 경보 체계 발전 기반 마련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 -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02-2181-0767)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약칭「지진관측법」이 1월 22일(목)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이 법의 시행으로 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경보, 기술개발, 국내외 협력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운영,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민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입니다.
 - 이 법의 시행을 계기로 기상청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향상시켜 지진·지진해일·화산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참고)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

지진관측법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하고 지진·지 진해일·화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
- 주요내용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제4조)
- 지진 · 지진해일 · 화산 관측소 설치 및 관측망 구축 · 운영(제6조)
-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및 지진조기경보 발령(제14조)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제 17조)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기술을 개발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제20조)
- 관계기관과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협의(제24조)
- 시행일 : 2015년 1월 22일

취약계층 안전 · 건강을 위한 한파특보 문자서비스 확대 운영

기상청 예보정책과 (☎ 02-2181-0501)

- 취약계층 관리자(노인돌보미, 농촌지역 이장단, 쪽방촌 담당자 등)를 대상으로 하는 특보 문자서비스를 한파특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기상청은 폭염의 발생빈도 증가 및 강도 심화에 따라 폭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취약계층 관리자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폭염특보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15년 상반기에는 지역별 온열질환 발생현황을 반영하여 문자서비스 대상자를 재정비하여 폭염특보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였고,
 - 2015년 하반기에는 취약계층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자서비스를 한파특보까지 확대, 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을 관리하는 공무원 및 민간관리자들에게 한파특보 문자메시지(SMS)를 제공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할 것입니다.

※ 한파특보 발표기준

주의보	경보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 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 으로 예상될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 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취약계층 관리자 대상 한파특보 문자서비스

- 추진배경 : 취약계층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자서비스 한파특보까지 확대
- **주**요내용
 - ① 한파특보 발표시 취약계층 관리자에게 SMS 발송
- 시행일 : 2015년 10월

태풍 정보 확대! '열대저압부 정보' 대국민서비스 실시

기상청 예보국 국가태풍센터 (☎ 070-7850-6355)

- 태풍 사전·사후 단계인 열대저압부*까지 정보 영역을 확대하여 태풍으로 인한 피해 를 최소화하고자 열대저압부 정보 대국민서비스 운영을 시작('15.05.01)하였습니다.
- * 열대저압부(TD; Tropical Depression) : 태풍보다 한 단계 약한 열대성 저기압의 일종
- 열대저압부는 단기간 발생되어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태풍이 열대저압부로** 약화된 뒤에도 여전히 위험 기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 이에 24시간 이내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고, 태풍 사후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열대저압부 정보를 기상청 누리집, FAX, 방재기상정보포털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에 게 제공됩니다.
 - 태풍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열대저압부 정보
 가 우리나라의 태풍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참고) 기상청 홈페이지〉행정과 정책〉보도자료〉올여름 태풍 정보 서비스로 더욱 안전해진다

열대저압부 24시간 예측정보 제공 확대

- 추진배경 :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① 열대저압부의 △위치 △강도 △이동방향 △이동속도의 현재 분석 및 24시간 예상 경로 등을 6시간(04, 10, 16, 22시) 마다 발표
- 시행일 : 2015년 5월 1일

고급골프장 등 민간시행자의 토지 수용 제한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 044-201-3665)

-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시행자의** 경우에는 **토지수용을 공익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 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의 고급골프장 등 **민간사업에 과도한 토지수용권 인정**은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는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우월하다고 볼 수 없어 **헌법불합치 결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였습니다.
 -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참고·해명자료〉지역주도 개발사업을 위한「지역개발 지원법」 개정안, 국회통과

민간의 토지수용을 공익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

- 추진배경 : 고급골프장 등 민간사업의 과도한 토지수용권 인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 **주요내용**
 - ① 토지 등의 수용은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
- 시행일 : 2015년 7월(잠정, 일부개정안 대통령재가중)

계획관리지역 내 일부 공장 신ㆍ증축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044-201-3708, 3713)

- 앞으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이 적어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은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지가 가능해집니다.
 -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업종이 다양화되고 환경오염 저감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취지입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90년대부터 유지되어 온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에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공장 신·증축 불편이 해소되고 투자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2015년도 완화되는 세부 업종

- 추진배경 :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허용업종 완화
- **주요내용**
 - ① 유기농화장품, 천연비누ㆍ세제 제조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 등에 입지 허용
 - ② 환경 피해 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순 공정 위주의 공장 입지 완화

세부업종

- ① 단순히 재료를 교반·혼합(물·용제류 등 미사용)하는 공정의 업종
- ②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화장품법)
- ③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농약관리법)
- ④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친환경농어업법)
- ⑤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천연물 추출된 재료)
- ⑥ 천연염색 제조시설(환경기준 충족)
- 시행일 : 2015년 7월(잠정, 국무회의 심의 예정)*
 - ※ 입법 진행중, 예산 심의중 등의 사유로 시행여부, 시행일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 표시와 함께 진행상황 기재 요망

도시계획의 기초조사로 재해취약성분석 포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044-201-3710)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기초조사의 하나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이 포 함됨에 따라 도시의 재해대응력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하 천변 저지대를 집중 개발하거나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이 홍수취약지역에 많이 분 포하는 등 재해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도시 개발로 인해 피해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에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도** 록 2012년도부터 제도화를 시작해 왔으며, 이번에 기초조사의 하나로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재해취약성 분석 제도 개요

- 추진배경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 분석을 통하여 자연재해를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
- **주요내용**
 - ① 도시계획수립* 시 기초조사에 재해취약성 분석 추가
 - *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 시행일 : 2015년 7월(2015년 1월 국토계획법 개정·공포)*
 - \times 재해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 $(^{\circ}15.4\$ 입법예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

한옥 등 국가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 · 활용 기반 구축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 한옥을 비롯한 우리 고유 우수건축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전·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간 국가적 유산으로서 큰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많은 건축자산들이 경제논리 등으로 인해 훼손·멸실되어 왔습니다.
 - 앞으로 우수건축자산의 경우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증·개축 등 건축행위 시 건축법·주차장법 등에 대한 일부 규제완화를 통해 적극 보전·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밖에 한옥과 관련 하여는 여러 지원책과 더불어 건축법 등의 일부 규정에 대한 별 도의 특례기준을 적용하여 한옥을 보다 쉽게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처럼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담은 동법이 6.4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 국토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한옥등건축자산법」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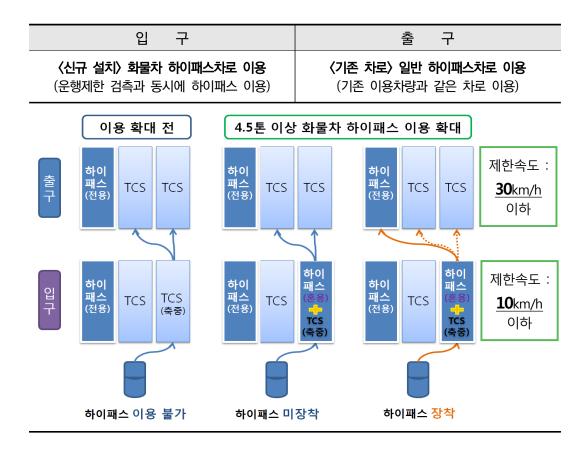
한옥등건축자산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건축자산 진흥을 통한 국가건축문화 진흥
- **주요내용**
 - ①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관계법령에 대한 규제완화
 - ②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을 통한 관례법령에 대한 규제완화
 - ③ 한옥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및 관계법령에 대한 규제완화
- 시행일 : 2015.6.4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24)

- '15.8월부터 **약 39만대에 달하는 화물차**들도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4.5톤 이상 화물차는 중량 측정, 과적 단속 등이 필요하여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하이패스 차로에 축중기를 설치하고, 하이패스 차로 폭 확대 등의 안전조치를 통해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일부 민자 고속도로 또는 폭 2.5m를 초과(운행제한규정 위반차량)하는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되나, 장기적으로 차로 폭 확대 등을 통해 전 구간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 이번 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129억원/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 통행시간 63억, 운행비용 31억, 환경비용 35억
- 참고로, **불법 과적**(운행제한위반) **차량**이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 **과적 단속을 회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 화물차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시에는 지정된 하이패스 차로^{*}만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 화물차의 중량, 규격을 측정할 수 있는 축중기가 장착된 차로



고속국도 휴게시설 주차장등에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의무설치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32)

- 고속국도에 연결되는 **휴게시설, 주차장** 등에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의무화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안전시설 설치 운영하였으나.
 - 앞으로는, 고속국도에 연결되는 **휴게시설, 주차장, 졸음쉼터, 버스정류시설**, "화물자동 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차 휴게소**에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항목

- 추진배경 : 고속국도 휴게시설, 주차장의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과속방지틱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주요내용**
 - ①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졸음쉼터, 버스정류시설,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안 전시설 설치
 - ② (안전시설의 종류) 과속방지턱, 속도제한표지, 노면요철, 점멸식 신호등, 감속유도시설 등
- 시행일 : 2015년 7월 7일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상상대로」운영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044-201-3882)

- 일반국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도로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과 연구기관, 도로분야 실무자들의 다양하고 창의적 아이디어 를 발굴하여 도로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7.17까지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합니다.
- 도로와 관련된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에 등록하면 누구나 **아이디어 를 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개진하여 자연스럽게 **발전적 정책대안을 발굴**할 수 있는 **쌍방향소통공간**으로, 「**상상대로**(想像大路)」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 「상상대로」는 아이디어를 뜻하는 '**상상**(想像)'과 아이디어가 소통하는 큰 길을 의미하는 '대로(大路)'의 합성어이자, 어느 누구나 '**상상하는 대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은 **연중 상시 운영**되며, 특히 **다음달 7.17까지** 보다 많은 아이디 어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상상대로**(www.roadidea.or.kr)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도로안전 높이기, 교통정 체 개선, 도로소음 저감 등 도로와 관련된 모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등록하면 됩니다.
 - 이와 함께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심도있는 검토
 가 필요한 연구주제에 대해 전문 제안도 받습니다.
 -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비롯해 다양한 상장과 상금 을 수여하고, 필요할 경우 **정책연구용역으로도 발주**할 계획입니다.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구축

- 추진배경 : 일반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기에 도로정책에 반영
- 주요내용
- ①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상상대로(想像大路)" 운영
- ② 제1회 공모전 개최 (~7.17)
- 시행일 : 2015년 7월부터 상시

저가형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044-201-3917)

- 교통약자인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의 가격(평균 17만원)을 상대적으로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가격을 인하할 계획입니다.
 - 그간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는 타인 대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문인식(장애인 본인 인증) 기능이 추가되어 일반 단말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였으나,
 - 2015년 9월부터 저가형 일반 행복단말기에 지문인식 기능을 접목하여 10만원대 미만 의 저가형 장애인 감면단말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저가형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

- 추진배경 : 저가형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의 보급으로 보급률 및 이용 편의성 향상
- **주요내용**
 - ① 저가형 하이패스 행복단말기에 지문인식 기능을 접목하여 저가형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 기 개발 및 보급(17만원 → 10만원 이하)
- 시행일: 2015년 9월경

경량항공기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시기 명확화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044-201-4288)

- 경량항공기 소유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안전성인증 신청시 안전성인증기관(교통안전공단)에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절차가 개선되었 습니다.
 - 그간, 항공법에 보험가입 시점(안전성인증을 받기 전까지)만 정하고 있고 실제 보험가 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불명확하였으나.
 - 안전성인증 검사 시 보험가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가입여부를 제도적으로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공법 시행규칙

경량항공기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시기 명확화

- 추진배경 : 경량항공기 소유자가 안전성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를 제출하도록함
- **주요내용**
 - ①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신청 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함
- 시행일 : 2015.8월말

일선수협, 투명 경영 기반마련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044-200-5429)

- 일선수협의 투명 경영 추진을 위해 2015년 8월 4일부터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일선수 협 감사 1명은 외부전문가로 선출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외부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실시**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 2015년에는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 조합에 우선 적용하고, 2016년부터는 300억원 이상 조합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던 일선수협의 감사 2명 중 1명은 외부전문가로 선출토록 하여 감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도자료〉수협비리 근절 위한 수협법 개정안 공포

일선수협 투명경영 추진 계획

- 추진배경 : 일선수협 비리 근절 대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① 외부감사 의무화(필요시→의무화)
 - 1단계 : ('15) 직전 회계연도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 2단계 : ('16) 직전 회계연도 자산총액 3백원원 이상
 - ② 외부전문가 감사 선출(조합원 감사 2명 → 조합원 1명, 외부전문가 1명)
- 시행일 : 2015년 8월 4일

☆수산업, 어촌 정책의 기본 방향을 규정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시행☆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044-200-5427)

- 수산업·어촌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생산부터 가공·유통 및 관련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수산업 전반의 기본 방향을 규정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그 동안 수산업·어촌 정책의 기본방향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농업· 농촌 분야와 공동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어려웠으나,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제정으로 어업생산(1차), 가공(2차), 유통 및 서비스업(3차) 등 수산업과 어촌을 포괄하여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도자료〉「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정안 국회 통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산업·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
- 주요내용
 - ① 수산인의 날 시행(제5조)
 - 기존 '어업인의 날(매년 4월1일)'을 '수산인의 날'로 변경하여 시행함으로써 생산자(어업 인) 중심의 행정에서 나아가 수산업 전반의 위상을 제고
 - ②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제7조)
 - 서로 다른 법률에 있는 2개의 수산업 관련 법정 계획*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으로 통합하여 수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 *「수산업법」상 '수산진흥종합대책'、「농어업 기본법」상 '어업·어촌 발전계획'
 - ③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제32조)
 - 수산업·어촌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산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 ④ 수산업 지원 전담기관 지정·운영(제33조), 수산발전기금 설치(제46조~제50조) 등
- 시행일 : 2015년 12월 23일

어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어촌관광휴양사업 추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6)

-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 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어촌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하여 어업법인의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어업법인의 사업범위는 협업적 어업경영,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 출·판매 등에 제한되었으나, 2015년 7월 7일부터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어촌관광휴양사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통합검색〉법령바다〉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어업법인의 사업법위에 관광휴양 사업 추가

■ 추진배경 : 어업법인에 대한 투자촉진·효율적 관리 및 경영효과 제고 등

■ 주요내용 : 어업법인의 사업범위에 관광휴양 사업 추가

■ 시행일 : 2015년 7월 7일

어업법인이 설립, 변경 등기를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기 사실 통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6)

- 어업법인이 설립, 해산, 인수·합병 등으로 설립·변경 등기를 한 경우 일정 기한내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기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실제 어업현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어업법인의 설립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특정 어업법인이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정관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일탈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7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 어업법인이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통합검색〉법령바다〉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어업법인의 설립, 변경 등기를 한 경우 지자체 통지 의무

- 추진배경 : 어업법인의 위법·사업범위 일탈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
- 주요내용
 - 어업법인이 설립, 변경 등기를 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 시군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15년 7월 7일

면허어업권자 주소변경 신고의무 규제 폐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02-200-5516)

- 어업권자(면허어업)가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주소변경신고 의무를 2015년 9월23일부터 면제받게 됩니다.
 - 현재의 수산업법은 면허어업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업권자가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5년 9월 23일부터는 어업권자가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주소변경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어업권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것입니다.
 -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도자료〉수산업법개정 ··· 면허어업권자 주소변경 신고 의무 규제 폐지

면허어업권자 주소변경 신고의무 규제 폐지

- 추진배경 : 어업권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주소 이전 상황을 파악 할 수 있으므로 주소변경 신고 의무 개선
- **주요내용**
 - 어업권자가 같은 시·군·구 자치구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 면제
- 시행일 : 2015년 9월 23일

불법어업 행위자 면세유 공급 중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 02-200-5563)

- 어업인이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어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 도 2015년 7월 1일부터 면세유 공급이 중지 됩니다.
 - 현재는 어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세유 공급이 중지되고 어업정지 처분에 갈음
 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어업활동이 가능하여 면세유를 공급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2015년 7월 1일부터는 불법어업행위 근절 등을 위해 수산관계 법령 등에 따라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징금 처분 포함)을 받은 경우에 면세유 공급이 중지 됩니다.
 - 이번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면세유 공급 중지는 불법어업행위 근절, 행정처분간 형 평성 제고, 면세유 제도취지 등을 감안하여 면세유 공급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도자료〉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면세유 공급 중지

불법어업 행위자 면세유 공급 중지

- 추진배경 : 불법어업행위 근절, 행정처분간 형평성 제고 등의 차원에서 개선
- 주요내용
 -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면세유 공급중지
- 시행일 : 2015년 7월 1일

☆국적 크루즈선사 지원 등을 위한 제도 시행으로 크루즈산업 활성화 초석 마련☆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044-200-5720)

- 지난 2월3일 공포된「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8월4일 부터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는 국적 크루즈 선사 등 크루즈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없었으나,
 - 공유재산의 대부,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카지노업 허가 특례, 크루즈 전문인력(승무원) 양성사업 등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이 종합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시행됩니다.
- 또한, 법과 함께 시행 예정인 하위법령에 크루즈 카지노업 허가요건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크루즈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준도 시행됩니다.
-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정책자료〉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시행 내용

- 추진배경 :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 추진
- 주요내용
 - ① 크루즈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 ② 공유재산의 대부
 - ③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 ④ 카지노업 허가 특례
 - ⑤ 해외 마케팅 지원
 - ⑥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 시행일 : 2015년 8월 4일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신설에 따른 다양한 마리나 서비스업 활성화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 044-200-5255)

-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요트 렌탈, 클럽형 마리나 운영** 등이 가능한 마리나 서비스업이 7월부터 도입됩니다.
 - 지금까지 개인 요트 대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많은 비용을 들여 비상구조선, 매표소·화장실 등 불필요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마리나 항만법 의 마리나선박 대여업 신설로 이러한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 또한, 마리나 운영사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신설**로 **클럽**라운지 서비스, 선박 수리·청소 등의 관련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도 선박이나 마리나 시설 조성에 **많은 초기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하여, 마리나 선박이나 마리나 선박 보관·계류 시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도 가능케 하였습니 다.
 -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도자료〉마리나 항만법 개정(보도자료 게시일은 변경될 수 있음)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추진배경 : 선진국형 마리나 서비스업 도입을 위한 마리나항만법 개정
- **주요내용**
 - ① 수상레저사업, 유선업에 비해 등록기준과 규제가 대폭 완화된 마리나선박 대여업 신설
 - ② 선박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신설
- 시행일 : 2015년 7월 7일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시행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2)

-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여객선 안전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운항관리자**의 소속이 선사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되어 여객선 안전관리의 **공공성**이 **강화**됩니다.
 - 연안 여객선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여객 서비스 개선 및 해상 안전 도모를 위해 카페리 등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에 대한 선령제한을 강화(30년→25년)합니다.
 - 또한,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최대 3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강화**하여 **사 업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입니다.
 -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도자료〉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연안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시행

- 추진배경 :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 강화를 위한 제도 시행
- 로 주요내용
 - ① 여객선 운항관리조직 이관(선사 이익단체→공공기관)
 - ② 카페리 등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에 대한 선령제한 강화(30년→25년)
 - ②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강화(최대 3천만원→10억원)
- 시행일 : 2015년 7월 7일

연안여객운송사업의 민간 자율 · 경쟁 토대 마련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2)

- 우수 사업자 진입 촉진 및 민간 경쟁기반 마련을 위해 진입장벽을 폐지하고 「사업자 공모 제」를 도입합니다.
 - 과거,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던 수송수요기준을 폐지하고 「사업자 공모제」를 실 시하여 건실한 선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력을 가진 선사만 여객운송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면 허기준에 최소 자본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도자료〉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연안여객운송사업의 민간 자율ㆍ경재 토대 마련

- 추진배경: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에 따른 여객운송사 업의 진입장벽 철폐 및 경쟁 촉진
- **주요내용**
 - ①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체제 개편
 - * 수송수요기준에 따른 면허발급(현행) → 사업자 공모를 통한 면허발급(변경)
 - ②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에 자본금 규정 신설
- 시행일 : 2015년 7월 7일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 강화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2)

- 2015년 7월부터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이 강화됩니다.
 -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 6개월 이내 운항정지에서 등록 취소 또는 해당 선박 의 감선조치로 강화합니다.
 - 또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의 상시 감시체제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 유류세 보조금 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도자료〉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 강화

- 추진배경: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과제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추속조치
- 주요내용
 - 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분 강화(최대 6개월 운항정지→ 등록취소 또는 해 당선박 감선)
 - ② 위반횟수 처분기준 강화(최근 3년→5년)
- 시행일 : 2015년 7월 7일

중대 해양사고 발생선박 정보공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044-200-5820)

-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중대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한 **정보공표**가 **의무화** 됩니다.
 - 지금까지는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건수**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화** 하였으나, 앞 으로는 **침몰·좌초 등 중대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선박정보를 공표**할 계 획입니다.
 -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선박의 명세, 소유자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실적도 함께 공표됩니다.
 - 중대 해양사고 발생선박에 대한 정보공표를 통해 **선박소유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 민들의 안전한 선박이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법령〉해사안전법 시행예정 법률안

중대 해양사고 발생선박 정보공표

- 추진배경 : 선박 안전도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 **주요내용**
 - ① 중대 해양사고 발생선박 정보공표 의무화
 - ② 선박의 명세, 소유자,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실적 등 공개
- 시행일 : 2015년 12월(6월중 공포 및 6개월 후 시행)

복지·여성·고용노동

임상시험 거친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보험급여과(☎ 044-202-2451, 2732)

-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의 경우 **시의료기술평가를 1년가 유예**하 여 조기에 임상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 기존에는 신의료기기가 식약처 허가를 받은 후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거쳐야 건강보험 요양급여 · 비급여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가 유예되** 어 바로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 됩니다.
 - 또한,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임상시험 요건을 강화하고 부작용 모니터링도 실 시합니다.

* **기 존** :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80일) **→ 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 280일) **→** 요양급여 결정(복지부. 150일) / 현장 활용

* **개 선**: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 요양급여 결정(복지부, 150일) / **현장 활용 → 신의**

료기술평가(복지부, 280일)

신의료기술평가 시청인이 해당 의료기술이 요양급여 · 비급여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일원화하여 개선합니다.

〈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확인 절차 개선안 개요 〉

<u>기 존</u> "민원인이 유리한 곳에 확인"

<u>개 선</u> "심평원으로 신청 일원화"

단순 확인

심층 검토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신의료기술평가시 평가 대상여부 회신(90일 이내)
- ▶ **심평원** : 민원인이 문의시 개별 답변

<u>심평원</u>이 30일 이내 회신

심평원 접수 → <u>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u> → 심평원이 회신

- 기존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90일 이내)와 심평원에서 모두 특정 의료기술이 요양 급여·비급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회신을 하였습니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심의기구로 보건의료 전문가 등 20인으로 구성(「의료법」제54조)
- 앞으로는 요양급여·비급여 여부를 확인하는 **창구를 심평원으로 단일화**하여,
 - 심평원이 기존 결정사례에 근거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것은 30일 이내에 회신**하고,
 -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신할 수 있 도록 합니다.
- 이에 따라, 동일 의료기술이 급여 ·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평원과 신의료 기술평가위원회가 일관된 답변이 가능해지고,
 - 심평원에서 직접 판단이 가능한 건은 30일 이내에 회신되어 **기존보다 약 2개월 빨리** 의료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임상시험 거친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 추진배경 : 신의료기기에 대해 조기시장진입을 허용
- 로 주요내용
 - ① 임상시험을 거친 식약처 허가된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 * 기 존 :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80일) → 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 280일) → 요양급여 결정(복지 부, 150일) / 현장 활용
 - * 개 선 :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 요양급여 결정(복지부, 150일) / 현장 활용 → 신의료기술평가 (복지부, 280일)
-] ② 요양급여·비급여 확인 창구 일원화
 - * (단순확인) 심평원이 30일 이내 회신
 - * (심층검토) 심평원 접수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 → 심평원이 회신
- 시행일 : 2015년 하반기(시행규칙 개정 중)

3대 비급여 개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44, 2743)

-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14.2월 발표)에 따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15년에도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 * '14년에는 선택진료비 부담 35%감소, 4·5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간병부담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28 개 병원에서 제공 등 추진함
 - 선택진료비는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80%→67%(단,** 진료과목별 최대 75%까지)로 낮추어 원치 않는 선택 진료 이용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15.9월)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 를 현행 50%→70%까지 강화하여,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15.9월)
 -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지방 중소** 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15.1월~)
 - ※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은 www.nhis.or.kr 조회 가능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추가비용 징수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	병원별 80%	병원별 67%으로 축소하되, 진료과목 별 최대 2/3(75%)까지 지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15.9.1)
		* 진료과목별 최소 1/4의 인원은 비선택 의사로 두도록 보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4, 2479)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 의무	50% 이상	70% 이상으로 확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9.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4, 2743)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운영	국고 지원 시범 사업	- 간호 인력 등 자격을 갖추어 신청하는 모든 지방·중소병원에서 - 건강보험 적용 · 본격 실시	'15.1.1일~ 지속 시행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24)

어르신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4)

- 금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을 받는 틀니(완전, 부분) 및 치과임플란트 대 상자가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 으로 확대됩니다.
 - * '15.7.1. 기준으로 1945.7.1. 이전 출생자
 - 대상 연령이 낮아짐과 함께 완전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 나 도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을 받게 됩니다.
 - *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로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대하여 급여 적용 (이 외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
- 국정과제 및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2016년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르신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추진배경 :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어르신들의 건강유지와 의료비 부 담 완화
- 주요내용
 - ①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확대 : '15.7월부터 70세 이상 * ('14년) 만 75세 이상 → ('15년) 만 70세 이상 → ('16년) 만 65세 이상
 - ② 금속상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
- 시행일 : 2015.7.1.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금년 7월, 틀니, 치과임플란트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2-202-2731)

-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어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 및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본인부담이 20%에서 10%로 경감 됩니다.('15.7.1.)
 - * 대상 : 35세 이상의 임신부로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35세 미만의 임신부로서 해당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가정 내에서 호흡보조기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호흡보조기 임대비용**을 건강 보험 **요양비**에서 **지원**합니다. ('15.11월 예정)
 - 현재 제1형 당뇨병 대상으로 지원 중인 **혈당측정검사지 이외 필수 소모품**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는 **제2형 당뇨병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합니다. ('15.11월 예정)
 - 또한, 장애인보장구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지나치게 협소한 보장구의 기준금액과 급여 기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15.11월 예정)
- 이에 따라 장애인, 임산부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 재가치료에 대한 건 강보험 지원 확대로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5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 추진배경 :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주요내용**
 - ①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20%→10%)
 - ②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 경감(20%→10%)
 - ③ 재가 호흡보조기 요양비 적용
 - ④ 당뇨병환자 요양비 급여 대상 및 품목 확대
 - ⑤ 장애인보장구 급여 품목 확대 및 기준금액 인상
- 시행일 : 2015년 7월 1일(①,②), 11월(③,④,⑤, 잠정, 개정안 마련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2)

-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의 **탈수급 유인** 을 강화하기 위하여, '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합니다.
 -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 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합니다.
 - 아울러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합니다.
 -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 급여별 세부 개편 방안 개요 〉

현 행 개편 후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 급여수준(내용) 선정기준 담당부처 (내용) 중위소득 중위소득 생계^{*} 복지부 28% 수준 28% 수준 최저생계비의 80%수준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제외) 중위소득 지역별 주거 국토부 43% 수준 기준임대료 최저생계비 필수의료서비스의 중위소득 낮은 본인부담률 의료 현행과 동일 복지부 40% 수준 (현물급여) 수업료, 교과서대 등 중위소득 교육 현행과 동일 교육부 (현물급여) 50% 수준

^{*} 중위30%까지 단계적 인상 예정

-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합니다.
-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15년) :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일 경우 (기존) 298만원(423만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 → (개선) 485만원 이상이면 부양능력 있다고 판단
-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의료비, 장애용구)되는 점을 반영하여,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며,
- 교육급여에 대하여는 교육이 기회균등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고 **지원수준이 강화**되는 한편.
 - 일할 능력있는 분들은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일을 통한 자립의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6월부터 신청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추진배경 : 급여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수준 현실화 및 근로능력자의 탈수급 유인 강화
- **주요내용**
 - ① '전부 아니면 전무'방식의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 유인 제고
 - ②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 관점(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보장수준 현실화
 - ③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 시행일 : 2015.7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044-202-3204)

-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가 국민행복카드에 통합됩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한 경우, 추가 신용·체크카드 발급을 하지 않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기능만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민행복카드에 남아있는 정부지원금액을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 행복카드의 편의성이 확대됩니다.
 - 하반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국민행복카드 내에 남은 바우처포 인트를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 *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 검색 또는 www.socialservice.or.kr 접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 추진배경 : 원카드 멀티서비스 구현 및 불필요한 신용카드 발급 최소화
- **주요내용**
 - ① 기 발급받았던 국민행복카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가하여 사용 가능
 - ② 국민행복카드에 남아있는 정부지원금액(바우처포인트) 온라인 확인 가능
- 시행일 : 2015년 7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의무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044-202-3304)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축물* 중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 *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그리고 어린이 등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 경 인증'을 통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게 됩니다.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개요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국가·지자체가 신축하는 건축물)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확대하고 시설접근성을 확보하여 비장애인·장애인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 구축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물 등의 시설에 대하여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으며, <u>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u> 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 인증업무에 대하여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인증기관에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LH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업무실시 중
- 시행일 : 2015년 7월 29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차표지 운영 ·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044-202-3304)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표시 차량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장애 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 근거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변경 전	변경 후
명칭	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기존 발급대상(①,②,③,④) + 대상자 확대 ⑤ 보행 장애인의 보호자 ⑥ 재외동포 및 외국인(보행상 장애인) ⑦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하는 법인·단체와 시설 등

■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 등, 주차표지 관리를 강화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보행상 장애 가 있는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정사용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재발급 제한 및 사용정지** : 위반횟수에 따라 6개월~2년(1회~3회 적발)
- 주차방해 행위
 - (정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 **(과태료)** : 50만원

-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5. 4. 14.)
 - ②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5. 5. 14.)

난임부부에게 심리 및 의료상담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02-2023-3395)

- 7월1일부터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들의 심리적 지지를 위한 심리상담과 난임치료 관련 의료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난임부부의 정신적 · 심리적 고통에는 임상심리사 또는 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가진 임 상심리전문가가 온라인(www.agasarang.org) 및 전화상담(1644-7382)과 대면상담을 제공하고
 - 의료상담은 산부인과 전문의 7명과, 비뇨기과 전문의 1명이 **난임치료 관련 궁금한 사항** 에 대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신·출산·육아 종합정보제공 사이트인 **"아가사랑** (www.agasarang.org)"의 난임상담 메뉴로 들어오면 언제든지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아가사랑 모바일 웹(m.agasarang.org)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난임부부 상담서비스 제공 세부내용

구분	상담종류	운영방법	운영시간
심리상담	인터넷 상담	 "아가사랑"사이트(www.agasarang.org) * 아가사랑 → 상담 → 난임상담 → 심리상담 모바일 웹 : 아가사랑((m.agasarang.org) * 아가사랑 → 상담 → 전문가상담 → 난임심리 상담 	■신청시 24시간 이 내 답변
	전화상담	■ ☎ 1644-7382 (출산빨리)	■ 월 요 일 ~ 금 요 일 (09:00~17:00) - 단, 첫째, 셋째 월 요일은 13:00부터 이용가능
	대면상담	■ 인구보건복지협회내 희망상담실 - 온라인으로 사전예약 후 방문 상담 * 아가사랑 → 상담 → 상담예약 → 난임내원상담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인구보건복지협회 2층 희망상담실 * (지하철 2호선) 당산역 6번출구 → 횡단보도 맞은편 하나은행앞 → 마을버스 영등포 03 승차→ 인구보건 협회 정류장 하차 * (지하철 9호선) 당산역 10번출구 → 하나은행앞 → 마을버스 영등포03승차 → 인구보건복지협회 정류장 하차	요일은 13:00부터 이용가능
의료 상담	인터넷 상담	 "아가사랑"사이트(www.agasarang.org) * 아가사랑 → 상담 → 난임상담 → 의료상담 모바일 웹: 아가사랑((m.agasarang.org) * 아가사랑 → 상담 → 전문가상담 → 난임의료 상담 	■신청시 24시간 이 내 답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53)

-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2개소 확충됩니다.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2개소(강원, 대구) 확충으로 노인학대 신고에 따른 신속한 현 장조사 및 방문상담이 가능하게 됩니다.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전화 및 사례접수,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학대사례 관할면적 감소로 노인인권 보호와 학대 피해노인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연락처
 - : 대표번호 1577-1389 /(강원남부) 033-336-4212 (대구북부) 미정

2015년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내용

- 추진배경 :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 처리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 **주요내용**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27개소에서 강원(원주), 대구 기관 증설로 29개소 운영
- 시행일 : 2015.7.1. (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2015.8.1 (대구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광역치매센터 확충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54)

-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내실화를 위한 광역치매센터가 2개소 확충됩니다.
 - 광역치매센터의 2개소(전남, 제주) 확충으로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수행체계가 확대됩니다.
 - 광역치매센터는 관련 치매 관련 인식 개선, 교육사업, 시군구 보건소 기술지원, 지역 내 치매관련 자원 및 봉사활동을 연계하는 기관으로, 전남과 제주지역에도 광역치매 센터 설치로 이와 같은 사업의 추진 및 관리가 강화됩니다.
 - * 중앙치매센터(1666-0921),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전남광역(미정), 제주광역(미정)

2015년도 광역치매센터 확충내용

- 추진배경: 지역사회에서 치매관련 인식개선, 교육사업, 시군구 보건소 기술지원, 지역 내 치매관련 자원 및 봉사활동 연계를 위한 센터 확충
- **주요내용**
 - 시도에 설치된 광역치매센터가 기존 11개소에서 13개로 확대
- 시행일 : 2015.10.1. (전남광역치매센터) 2015.10.1 (제주광역치매센터)

보육비용 신청 정보 사전 고지 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63)

- 보육료 및 양육수당과 관련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보육비용 신청 정보 사전 고지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시행(' 15.9.19)으로 **출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에, 보육비용 대상자로서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매년 1월말** 에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가 **서면으로 제공**됩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보육비용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 등이며, 금년 9월부터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5.4.30)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 사전 고지 제도

- 추진배경 :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신청 누락 방지를 통한 적시 보육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① 출생아에 대해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관련 정보 서면 제공
 - ② 보육비용지원서비스 미이용 영유아에 대해 매년 1월말 관련 정보 서면 제공
- 시행일 : 2015년 9월 19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 044-202-3593)

-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15. 9. 19.*부터 의무화 됩니다.
 - * 기존 어린이집은 3개월간 설치 유예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 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7.28,까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 추진배경 :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방지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
- **주요내용**
 - ①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 등
- 시행일 : 2015년 9월 19일*(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중)
 - * 기존 어린이집은 3개월간 설치 유예

18세 미만 미성년 근로자 사업장가입 당연적용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44-202-3633)

- 18세 미만 미성년 근로자의 사업장가입 당연적용을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지금까지 **18세 미만 근로자**들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여도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국 민연금 가입이 가능**했으나,
 - 앞으로는 18세 미만 근로자들을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만 제외하도록 하여,
 - 미성년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실직자, 시간제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 국민 연금 가입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가입 당연적용

- 추진배경 : 미성년 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 ① 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가입 당연적용
 - ②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적용제외 가능
- 시행일 : 2015년 7월 29일

국민연금 수급 연기(연기연금)의 선택권 확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044-202-3632)

- 국민연금 지급연기 신청에 관한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 하고자 합니다.
 - 지금까지는 노령연금 수급을 연기하려는 경우(연기연금*) 전액(100%) 연기만 가능하여 선택에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급여의 일부(50%~90%) 연기가 가능하게 되어 수급 자의 형편에 맞게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 61~66세 기간 중 연기한 개월수에 따라 향후 매 월 0.6%(연 7.2%)를 연금 급여액에 기산

〈 사례 : 1년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

연금 수령 연령	61세~62세 미만	62세 이상
연기하지 않는 경우	80만원	80만원
50% 연기하는 경우	40만원	82.9만원
60% 연기하는 경우	32만원	83.5만원
70% 연기하는 경우	24만원	84만원
80% 연기하는 경우	16만원	84.6만원
90% 연기하는 경우	8만원	85.2만원
100% 연기하는 경우	0만원	85.8만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 개선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044-202-3632)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을 연령별 감액에서 소득 수준별 감액으로 변경한다.
 - 지금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였지만, 앞으로는 A값(가입자 평균소득,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게 됩니다.
 - * 연금급여 수급자(61~66세)에게 A값(204만원, 2015년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급여를 감액하는 제도
 -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의 근로유인을 확대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현행보다 많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감액방식 변경 〉

현행		개정 (A값 초과액)	
연령	감액율 (노령연금 대비)	소득 중 A값 초과액 (초과소득월액)	감액금액* (노령연금의 50% 이상 감액 제한)
61세	50%	0~100만원	0~5만원
62세	40%	100~200만원	5~15만원
63세	30%	200~300만원	15~30만원
64세	20%	300~400만원	30~50만원
65세	10%	400만원~	50만원~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확대시행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21)

- 만 65세 이상 어르신(전국 650만 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확대됩니다.
 -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올해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매년 무료로 시행됩니다.
 - `15년 10월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병·의원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무료접종 대상: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에서 장시간 대기하던 불편이 사라지고, 예방접종 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15년 하반기 보도 예정)

만 65세 이상 노인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확대 시행

- 추진배경 :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보건소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 시행
- **주요내용**
 - ① 만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실시(매년 1회)
 - ② 무료접종기관이 기존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돼 접근 편의성 향상
- 시행일 : '15년 10월(백신 조달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양성평등기본법」7월 1일부터 시행(핵심)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 02-2100-6149, 6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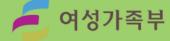
- 공공기관의 관리직 목표제 시행, 모·부성권 보장 등 양성평등 시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양성평등기본법」의 시행으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반 성장**을 위한 시책이 강화됩니다.
 -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에 대한 인식 및 관련 법 · 제도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 과거 「여성발전기본법」을 통해 낙후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고 여성 능력개발을 통한 여성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였다면,
 - 「양성평등기본법」은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참고

「양성평등기본법」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

달라진 내용

구 분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15.7.1.시행)
목 적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 도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
기본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매 5년)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매 5년)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근거 마련
총괄	심의 · 조정	여성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국무총리 소속) *분위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조정 추진 체계	정책 수립	여성정책책임관(기획조정실장급) 지정 * 모든 중앙행정기관 대상	양성평등정책책임관(기획조정실장급) 지정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5급) 지정 • 모든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대상
실태조사		-	양성평등 실태조사(매 5년)
기념행사		여성주간(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	양성평등주간(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
시 책		 ▶ 모성보호 ▶ 공직 · 정치 · 경제활동 참여 ─ 여성의 참여확대 지원 노력 ▶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시책 강구 ▶ 대중매체 성차별 개선 	 ▶ 모·부성권 보장 ▶ 공직·정치·경제활동 참여 ─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지원 시책 마련 노력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 여성건강증진시책 마련 및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 보장 ▶ 대중매체 성차별, 성별을 이유로 한 편견·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 개선 • 여성가족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개선 요청 근거 마련



신설된 주요 내용

시 책

적극적 조치

정책결정 참여

성 주류화 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통계

성인지 교육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 시키는 교육

국가ㆍ지역 성평등 지수

*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한 것

성차별의 금지

여성친화도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국제협력

내 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관리직 목표제*** 시행 근거 규정

*관리직위 및 임원 임명 시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성 주류화 조치 의무 규정

*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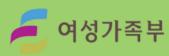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성인지 예산 실시, 성인지 통계 산출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 ▶ 대상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성인지 예산과 결산 담당공무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 담당공무원
- ▶ 내용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 성인지 관점의 이해/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 ▶방법 강의,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 ▶ **수탁기관** 지방공무원 교육원, 대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 ▶ 내용 경제, 교육, 문화, 보건, 복지, 인권 분야 및 의사결정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 ▶조사주기 매년
- ▶ 공표방법 관보 게재 또는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 노력 규정

- ▶ 지정대상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 ▶ 지정유효기관 5년
- ▶ 재지정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결정

국제개발 협력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한 노력 규정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실시결과 공개 의무화(핵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02-2100-6253)

-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시설의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청소년 활동 기반이 더욱 강화됩니다.
 - 2014년 7월부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실시가 의무화** 되어 종류별 2년 주기 로 각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2015년 8월부터는 **점검결과 공개가 의무화** 되어 개별 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를 확인 할 수 있게 됩니다.
 - 점검 결과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청소년활동정보서비 스'(www.youth.go.kr)에 공개하고, 미흡 사항은 개선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청소 년 활동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개요

■ 추진배경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공개를 통한 안전한 청소년활동여 건 조성

주요내용

① 관련 법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② 점검 주기: 수련시설 유형별 2년 주기

③ 점검 분야: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등

④ 점검 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⑤ 결과 활용 : 교육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유를 통해 학교단체 수련활동시 활용, 미흡사항

개선유도・지도점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0개소 신규 개소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100-6208)

-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구인·구직 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10 개소가 새로 문을 열게 됩니다.
 - * 부산(강서새일센터), 대전(배재테크노새일센터), 경기(김포·파주·안양창조산업새일센터), 충남(홍성새일센터), 전북(완주새일센터), 전남(화순·영암새일센터), 경북(영천새일센터)
 - 이에 따라,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7개소, 농어촌형 새일센터 5개소를 포함하여 전국 147개소가 운영됩니다.
 - 또한, 기업맞춤형 · 전문기술과정 등 직업교육훈련 60여 개 과정을 추가 선정하여 총 780여 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 ('14) 651개 과정 → ('15.1차 선정) 714개 과정
 - ※ 취업관련 상담☎: 1544-1199(새일센터 대표전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 추진배경 : 여성 고용율 제고를 위해서는 임산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사업내용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동행면접, 인턴제 운영,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원스톱 종합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상담 및 구인·구직 연계 : 구직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개별·집단상담, 취업정보제공 및 구인처 연계
- 직업교육훈련 : 경력단절여성의 연령·학력·경력 등 특성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 운영
- 새일여성인턴 :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지원('15년 6,005명)
- * 1인 총 300만원 한도, 6개월 이내, 월 60만원내 기업체 및 인턴자 지원
- 취업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 취업자 및 채용기업에 대하여 취업후 상담·멘토링 등 사후관리 지원
- 기대효과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여성고용률 제고

청소년지도사 · 상담사 자격취득 요건 강화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100-6236)

- 「청소년 기본법」개정('15.6.22.공포, '15.9.23.시행)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상담·활동 등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사·상담사에 대한 자격취득 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 동법의 시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아동학대죄,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청소년지도사·상담사가 될 수 없습니다.
- 이와 함께 청소년지도사·상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는 **3년간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개정내용

- **청소년지도사・상담사 결격사유**(제21조 및 제22조)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년→3년으로 강화)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u>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청소년성보호법 제2</u> 조제2항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 청소년지도사·상담사 자격 취소(제21조의2 및 제22조)
 - 자격 결격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및 자격증 양도시 반드시 자격 취소(재량규정 → 강행규정)
- 청소년지도사·상담사 부정행위자 제재처분(제21조의3 신설)
 - 자격검정 부정행위자는 3년간 자격검정 응시자격 정지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 02-2100-6382/6385)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게 상담·수사·법률·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가 서울, 경북 지역에 각각 1개 센터씩 2개 센터가 신규 개소합니다.
 - 삼육서울병원에 설치되는 해바라기센터는 동대문구, 노원구, 중랑구, 도봉구 등 서울 북동부지역의 피해자를, 김천제일병원에 설치되는 해바라기센터는 김천, 구미, 상주, 고령등 경북 중부·서부지역과 인근의 영동(충북), 무주(전북), 거창(경남)의 피해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 해바라기센터가 2곳 신규 개소됨에 따라 센터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장거리 이동으로 불편을 겪었던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해바라기센터 수 : ('14) 34개 → ('15) 36개
 - 한편, 해바라기센터는 수요자 입장에서 센터의 이름을 쉽게 기억하고, 이용 편의성이 높이기 위해 그 동안 나뉘어져있던 3개 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일원화하고, 일부 기능을 재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여성 ·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 · 아동센터'
 - **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서비스 지원 대상에 '학교폭력 피해자'제외, 해바라기아동센터 수사서 비스 지원 활성화

2015년 하반기 해바라기센터 신규 개소

- 추진배경 : 성폭력 피해자·지원을 위한 시설인프라 확대
- 주요내용
 - 해바라기센터 신규 개소 (2개소- 서울(1),경북(1))
- 시행일: 2015. 하반기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요건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4)

-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 보육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요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 는 지원을 강화했으며,
 - 특히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가 50% 이상이면 중소기업 기준으로 지원해왔습니다.
 -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기업 근로자 자녀 중심으로 보육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 기준으로 지원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 * 대기업 1곳, 중소기업 1곳이 공동으로 설치하여 대기업 아동 37인과 중소기업 아동 3인을 보육함에도 중소기업 기준으로 지원금 수령
 -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수'도 50% 이상이어야 중소기업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 게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 ☞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사업주 인센티브가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8)

-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1인당 월 지원금이 대기업은 10 → 20만원, 중소기업은 20 →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 허용시 지원금을 **사용 1개월 후 즉시 1개월치 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육아휴 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지급합니다.
 - 다만, 육아휴직 지원금은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고 근로자 천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월 10 → 5만원으로 인하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 채용 시** 종전에는 시작 30일 전 이후 채용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나, **하반기부터 시작 60일 전 이후에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 (대체인력지원금) 중소기업은 월 60만원, 대기업은 월 30만원 지원
- 육아휴직급여는 복귀 후 6개월 계속 근로시 제공하는 사후지급비율을 15% → 25%로 확대하여 직장복귀율을 제고합니다.
 -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 〉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

임금체불근로자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3)

-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체불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임금을 지급했으나, 2015년 7월부터는 사업주의 도산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에서 체불임금에 대해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도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합니다.
 - 지급 대상은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퇴직일 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 지급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다만, 승소 확정판결일자가 2015년 7월 1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 또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가 융자를 받아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을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재 직근로자의 체불임금까지 확대**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일을 관둔 임금체불근로자? 체 당금을 신청하세요!(2015.6.9.)

산업안전보건분야 예방 · 기획 감독에 주력

- 고용부, 7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체계 개편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202-7685)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의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 보건)을 개정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존에는 재해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벌 위주의 감독을 실시하였으나, 산재예방에 한계 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에 사업주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예방감독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는 취약 사업장이 안전보건컨설팅 신청을 하고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아 유해·위험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경우에는 감독을 유예하고 신청하지 않거나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 및 원인을 분석하여 제조업·건설업 등 분야별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패턴 3가지를 선정하여 사전예고제 형식의 기획감독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고를 유발하는 기계·기구 및 유해·위험작업을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떻게 감독하겠다는 것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집중 홍보*하여 명확히 알려 준 후 그 내용에 대해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 * 시기별 재해 특성을 반영, ' \bigcirc 월은 $\bigcirc\bigcirc$ 재해 예방의 달' 등으로 선정·집중 홍보

- 아울러, **산업재해가 발생하고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안전보건관 리 실태 전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독대상에 포함시켜 단속**할 계획입니다.
 - *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함
 -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분야 예방·기획감독에 주력한다.

2015년도 산업안전보건분야 감독체계 개편

- 추진배경 :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 안전보건관리 유도 및 산업재해의 선제적 예방
- 로 주요내용
- ① 예방감독, 기획감독 도입
- ② 산재 미보고 사업장 정기감독 대상 포함
- 시행일 : 2015년 7월 1일

05 통일·외교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개선

통일부 인도지원과 (☎ 02-2100-5834)

- 민간단체에 대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이 **개선**되었습니다.
 - 정부는 민간단체의 질서 있고 투명한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민간단체도 사실상 대 북지원 실적을 먼저 갖추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 실입니다.
 - 그러나, 앞으로는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반출할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민간단체의 대북참여 여건을 개선 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모자보건 및 농축산·산림 등 민생협력 분야에서 민간단체의 내실있는 대북 지원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시, 단체의 방북·대북접촉 경험 및 역량, 인도적 지원 경험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여부를 판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 통일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3085) 통일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 개선 (2015.4.22)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 개선

- 추진배경 :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 주요내용
 - ①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 ② 반출할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 시행일 : 2015년 4월 22일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사업(미래행복통장)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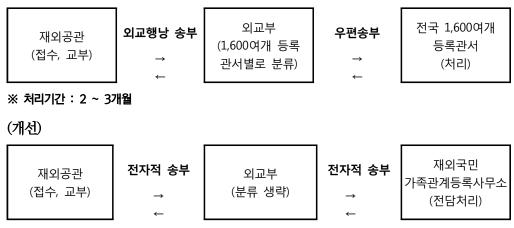
통일부 정착지원과 (☎ 02-2100-5922)

- 미래행복통장 제도의 실시를 통해 탈북민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 탈북민이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주거마련 등의 용도로 매월 저축을 하는 경우, 저축액과 동일 금액을 매월 적립하여 정착자산 형성 지 원금으로 지급합니다.
 - * 매월 50만원 저축시 4년간 최대 5천만원 적립 가능
 - 미래행복통장은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서 거주지 전입 6개월 후 3개월 이상 취업중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단, 신청자 본인이 "희망플러스 통장, 희망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 **중복** 하여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 적립된 금액은 주택구입·임대, 교육, 창업 등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참고) 통일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통일부, 하나은행과 미래행복통장 계좌운영 위탁계 약 체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방식 개선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 02-2100-8373)

- '15.7.1부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출생, 혼인, 이혼, 사망, 입양, 파양, 인지 등) 처리방식을 개선하여, 재외공관에서 신청한 **가족관계등록서류의 처리기간이 1~4일로 대폭 단축**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서류는 외교행당 및 우편으로 국내에 송부되어 처리 까지 2~3개월이 소요되었으나, '15.7.1부터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전담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설치되고, 전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부"하여 가족관계등록서류가 1~4일 내에 처리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3124호, 2015. 2. 3. 공포, 2015. 7. 1. 시행)]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 개선내용 (현행)



※ 처리기간: 3~4일 이내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전담기구) 설치 및 전자적 송부 방식 도입으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가 전문화되고,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재외국민 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06 보훈·국방·병무

보훈단체 수익사업 확대 및 관리 감독 강화

국가보훈처 단체협력과 (☎ 044-202-5474)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모든 **보훈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되며, 그에 따른 관리 감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보훈단체와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개별법에 규정된 단체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2015년 8월 4일부터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모든 보훈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5곳):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대한 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재향군인회구엽회전우회
 - 신규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9곳): 광복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대한민국무공수 훈자회, 4·19혁명공로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잔자회
 - 이와 함께 각 단체별로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은 더욱 강화됩니다.
 - ☞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4개 보훈단체에 수익사업 전면 허용

- 추진배경 : 보훈단체 간 수익사업의 형평성 제고 및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
- 로 주요내용
 - ① 광복회를 비롯한 14개 보훈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② 각 단체별 복지사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③ 회계감사 등 의무화
- 시행일 : 2015년 8월 4일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서 우선 구매(중요)

국방부 물자관리과 (☎ 02-748-5722)

- 국방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7월 1일부터 **접경지역에** 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 지금까지 접경지역은 대단위 군부대가 주둔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이 제약되는 등 피해 를 입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의 접경지역 지원을 통한 만군 상생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 동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이 확대되어, **지역경** 제 활성화와 접경지역에서의 만군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소식〉알림〉고시·공고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 고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납 고시

- 추진배경: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거 접경지역 민·군 상생 발전
- **주요내용**
 - ①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의 군납 확대
 - ②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 제조하는 업체의 접경지역 군부대 납품시 우대
- 시행일 : 2015년 7월 1일

병사 수신용 휴대폰 보급으로 사회와의 소통기회 확대(중요)

국방부 정보통신기반체계과 (☎ 02-748-5956)

- 군복무 중인 병사를 자식으로 둔 부모가 직접 자식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영 생활관에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부모들은 군 복무 중인 자식들이 전화하는 것에 의존하였으나, 올해 말 수신 용 공용 휴대폰이 병영생활관별로 지급되면, 부모들은 부대일과시간 이후 취침 이전까 지 원하는 시간에 군 복무중인 병사들과 통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수신용 공용 휴대폰은 2015년 말 기준 전군에 44,686대(생활관 당 1대)를 지급
 - ☞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정보공개〉간행물〉정책자료집〉국방비 홍보책자 〉2015 국방비 홍보책자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 지급

- 추진배경 : 부모들이 필요로 할 때 군 복무 중인 병사, 부대와 소통 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 관에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 지급
- **주요내용**
 - ① 전군 병영생활관에 수신용 공용 휴대폰 지급(44,686대)
 - ② 휴대폰 통화 여건 보장을 위해 생활관 주변 통화품질 개선
- 정상운용 : 2015년 11월(잠정)

시설관리 등 부대 지원업무에 민간자원 적극 활용

국방부 건설관리과 (☎ 02-748-5827)

- 국방부는 「민간개방 기본계획('15~'19)」에 따라 전투분야가 아닌 부대관리 업무를 민 간업체의 인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2015년도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육군 2개 사단과 해병 1개 사단의 시설관리, 청소 등의 지원업무를 민간용역 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 금년 6월부터는 육군 탄약창 1개 부대의 제초업무를 추가로 민간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장병들은 경계근무 이후 각종 부대관리 업무에 투입되지 않음으로써 **일과** 후 적정한 휴식을 보장받고, 교육훈련과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는 장병들의 병영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병영부조리를 감소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대관리 민간위탁 용역 시범대상 확대

- 추진배경 : 부대관리 민간위탁 용역 적용부대 확대
- **주요내용**
 - ① 시설관리·복지운영 등 전투근무지원분야에 대한 민간위탁 확대
 - ② 시범운영: (상반기) 육군 22·28사, 해병대 2사단
 - → (하반기) 육군 1개부대(5탄약창) 추가
- 시행일 : (시범운영) 2015.6.1.~9.30, 4개월간

예비군 사격훈련 체계 개선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5)

- 금년도 5월에 발생한 예비군훈련 총기사고를 계기로 예비군과 가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예비군 훈련을 위한 사격훈련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 **총기 고정틀과 안전고리의 재질과 규격을 표준화**하고, 사수가 물리적으로 안전고리를 개폐할 수 없도록 **사격 통제요원이 스마트키로 관리하는 등 사격훈련의 안전성을 강화** 하였습니다.
 - 또한, **사격통제 요원 운용과 사격통제 절차에 대한 통일안을 마련**하고, **훈련 유형에 따** 른 **사격 발수와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사격통제의 효율성을 더욱 높인 사격훈련 체계 개선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 선하면서 훈련성과는 극대화하는 예비군 훈련이 될 것입니다.

예비군 사격훈련 체계 개선

- 추진배경 : 예비군 총기사고 후속조치로 안전한 사격훈련체계 확립
- **주요내용**
 - ① 총기고정틀 및 안전고리 개선
 - ② 사선 통제간부 3명 / 사수 통제요원 사로별 1:1 배치 운용(5.15.부)
 - ③ 사격 전·중·후로 구체화된 통제절차 표준안 마련('15년 7월)
 - ④ 사격발수 및 방법 개선
 - * 동원훈련 : 9발(3발/6발, 2회)→10발(각 5발, 2회)
 - * 향방훈련 : 6발(각 3발, 2회)→5발(1회)
 - * 탄약보관 및 관리/분배를 중앙 통제탑에서 일원화하여 운용
- 시행일 : 2015년 7월

자발적인 성과를 유도하는 자율참여형 예비군 훈련 확대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5)

- 예비군이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여, 성과에 따라 조기퇴소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자율참여형 예비군 훈련'을 전체 예비군 훈련부대로 확대 시행합니다.
- * 15.1월 186개 부대 ⇒ 15.8월 208개 부대
- 또한, **훈련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훈련과제별 진행절차와 평가점검표 등을 보 완**합니다.
- 이로써 예비군들의 훈련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국가 위기 시 예비군 스스로가 대응할 수 있는 실전 위주의 훈련 성과를 극대화하여 예비전력의 정예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율참여형 훈련제도 확대 시행

- 추진배경 : 예비군의 자발적인 훈련참여 유도 및 훈련 성과 증대
- **주요내용**
 - ① '자율참여형 훈련'을 예비군 훈련부대 전체로 확대 시행
 - ② 훈련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 요소 및 점검표 보완
- 시행일: 2015년 8월

국방연구개발 지식재산권에 대한 민간 권한 확대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 (☎ 02-2079-6336)

- 국방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민간의 권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하여 확보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그동안 **국가가 소유하였던** '손톱 밑 가시' 규제를 개선하여,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였습니다.
 -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 국가와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 도록 하고, 기업 등 영리법인은 무상으로 실시할 수도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역량있는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이 적극적으로 국방 연구개발 에 참여할 동기가 부여될 것이며, 이를 통해 우수한 무기체계 개발 및 수출경쟁력 제고 로 창조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방위사업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방연구개발 지식재산권에 대한 민간 권한 확대

- 추진배경 : 역량있는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의 국방 연구개발 참여 동기 부여
- **주요내용**
 - ① 비영리기관: 국가와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가능 ② 업체: 실시권 허락 (기술료 받지 아니할 수 있음)
- 시행일 : 2015년 9월 28일

첨단 민간 우수기술을 활용, 국방 핵심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연구기관과의 수의계약 시행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 (☎ 02-2079-6383)

- 우수 기술 및 창조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전문연구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민간 우수기 술의 유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국방 핵심기술 연구개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계약이 원칙이었으나, 2015년 4월 제도개선을 통해 전문연구기관이 제안한 연구과 제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5년 하반기 소요결정되는 핵심기술 연구과제부터 적용됩니다.
 - 우수 기술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전문연구기관이 그동안 경쟁계약의 부담 때문에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를 기피하였으나,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민·군기술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고 방위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법령〉행정규칙〉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반영을 위한 수의계약절차 신설

- 추진배경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민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국방 연구개발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계약 절차 때문에 어려움 호소
- 주요내용: 민간의 우수한 연구개발 기관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연구기관이 제안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는 수의계약으로 국방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5년 4월 14일('15년 하반기 이후 소요결정된 사업 대상)

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 일원화에 따른 민원편의성 증진

방위사업청 품목심사담당관실 (☎ 02-2079-6833)

- 방산물자의 수출시 주요방산물자·일반방산물자 구분 없이 수출허가 기관을 일원화합 니다.
 - 지금까지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의 수출허가 심사업무는 방위사업청장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방산물자 구분 없이 모든 방산물 자의 수출허가 심사업무는 방위사업청장이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 즉,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를 병행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자는 방위사업청에 수출업 영위 신고를 필한 후 수출허가를 신청하면 되므로 품목에 따라 수출허가 신청기 관을 달리하여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법령〉방위사업법령 〉 방위사업법·방위사업법시행 령·방위사업법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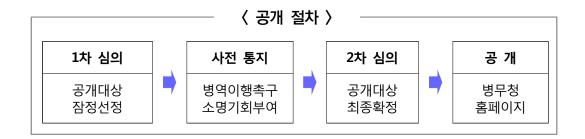
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 일원화에 따른 민원편의성 증진

- 추진배경 : 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 이원화에 따른 불편 등 부작용 발생
- **주요내용**
 - ① 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 일원화 (변경내용: 방위사업청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방위사업청장)
 - ② 방산물자 수출업 등 신고 (변경내용 : 주요방산물자 수출시 → 방위사업청장)
- 시행일 : 2015년 9월 28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제도 시행

병무청 병역조사과 (☎ 042-481-2781) 👶

-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를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병역기피자로 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입대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날짜에 징병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으로, 2015년 7월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 공개되는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나이・주소・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이며,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mma.go.kr)에 공개하게 됩니다.
-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지방병무청은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병역을 기피한 사람 중 공개할 대상자를 잠정 선정
- ② 잠정 선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여 조속한 병

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질병·수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병역을 기피한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③ 사전통지 6개월 경과 후 지방병무청별로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개인별 소명내용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공개
- ☞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뉴스마당〉보도자료〉2015년도 달라지는 병무행정 (관련규정) 병역법 제 8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 추진배경 : 병역 이행자의 자긍심 고취 및 기피자 사전 에방 등 성실 병역이행 유도
- 주요내용
 - (공개대상)국외불법체류자, 징병신체검사,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소집기피자
 - (공개항목)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
 - (공개방법)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 (공개절차)공개대상 잠정선정→사전통지·소명기회부여→공개대상 확정→공개
- 시행일 : 2015년 7월 1일(시행 이후 기피자부터 적용)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 의무화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042-481-3006)

- 예술·체육요원 복무 중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할 계획입니다.
 - '73년에 처음 도입된 예술·체육요원제도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소지자에 대하여 관련 분야에 계속 종사함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4주간 기초군 사교육만 받으면 '병역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34개월 간 종사해야 합니다.
 - 하지만 예술·체육요원 편입 이후 자유로운 활동으로 일반국민은 사실상 '병역면제'로 인식해왔고, 이에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 기여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5 년 7월부터 편입되는 예술·체육요원은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등 대상으로 공연, 강습(교육) 등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종사기간(34개월) 중 총 544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할 예정입니다.
 -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뉴스마당〉보도자료〉2015년도 달라지는 병무행정 (관련규정) 병역법 제 33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의12

예술ㆍ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 의무화

- 추진배경 : 병역이행의 형평성 제고, 예술·체육요원의 사회 기여도 강화
- ▼ 주요내용 : 예술·체육요원 복무 중 특기활용 봉사활동 의무적 실시
 - * 의무종사기간(34개월) 중 사회적 취약계층 등 대상으로 공연, 교육 등 봉사활동 총 544시간 의 무적 실시
- 시행일 : 2015년 7월 1일(시행 이후 편입자부터 적용)

약학대학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 상향 조정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39)

- 6년제로 전환된 **약학대학 재학생의 입영연기 연령이 26세에서 27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 이는 약학대학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동일 수업 연한의 의과, 한의과, 치과, 수의과 대학의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27세)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행됩니다.
 - ☞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뉴스마당〉보도자료〉2015년도 달라지는 병무행정 (관련규정) 병역법 제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

약학대학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 연령 상향 조정

- 추진배경 : 약학대학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 6년제 과정인 약학대학생의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상향
- 시행일 : 2015년 7월(잠정,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6.25.))

07 문화·통신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의무화 및 안전관리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 044-203-2839)

-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어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처음 배치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 2년 마다 1회 이상(1회 8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이해, 안전관리 실무 등의 의무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자의 전문 성을 제고함으로써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안전교육 실시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만원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 유원시설업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기구의 **안전성검사결과를 공개하도** 록 의무화함으로써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업무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 구·검사기관**에 위탁할 계획

안전관리자 교육 관련 법적 근거(관광진흥법)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②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15.2.3.〉
- ④ 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 ⑤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 기준 및 임무, 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5.2.3.〉 [시행일 : 2015.8.4.]

야영장업 등록(~8.3일), 야영장업 안전·위생기준 8.4일부터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 044-203-2840)

-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제(관광객이용 시설업)를 도입('15.1.29)하고 기존 야영장업의 경우 '15.8.3까지 등록토록 하였으며, 야영장업자가 지켜야 하는 『야영 장의 안전·위생기준』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8.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화재예방을 위해 야영객이 설치하는 천막 안에서 전기·가스·화기의 사용 및 폭발 위험 이 큰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 반입·사용이 금지되며
- 야영장업자가 운영하는 글램핑·카라반과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시설별로 소화기, 누전차단기, 단독 연기감지기 설치, 방염처리된 천막 사용 등의 안전장치를 갖춘 후 전기·가스 사용이 허용됩니다.
- 야영장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 처벌되며,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국민들이 야영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중에 있습니다.
 -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함('16.2.4일부터 시행)
 - 행정처분(1회 시정명령/ 2회 사업정지 15일/ 3회 사업정지 1개월/ 4회 등록취소), 과 징금(200만원)
 -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야영장 통합 안전기준 마련으로 안전 사각 지대 해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안전위생기준 내용

■ 추진배경: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제정

- 주요내용

- ① 이동식 천막안에서 전기, 가스 등 일체 화기사용 금지
- ② 사업자가 유료로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물(글램핑, 카라반 등)은 소화기, 누전차단기, 연기감지기 비치 및 천막은 방염처리 의무화
- ③ 사업자는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 설치하고 비상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방송시설 확보 등
- 시행일 : 2015년 8월4일(입법예고기간 6.18~7.8)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ㆍ시행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044-203-2737)

-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 예정입니다.
 - 현행 공연법은 객석 수 50석 또는 객석 바닥면적 50㎡ 이상 공연장에 대해서만 등록 의무를 부가하고 있으나, 2015년 11월부터 모든 공연장이 등록 대상이 됩니다.
 -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등록 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공연장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 등록 시 신고 후 별도의 갱신 의무가 없었던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에 대해 **1년 단위로 갱신 의무**가 부가됩니다.
 - 제출된 계획이 미비할 경우 지자체장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무대 기계·기구 수에 따라 실시 여부 및 그 주기가 구분되었던 **무대시설 안전점검**이 모든 공연장에 대해 3년주기로 의무화 됩니다.
 -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 는 **개정법률 시행 후 2년 6개월 이내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공연장 운영 정지 명령 및 폐쇄 조치 대상에 공연장 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재해대처계 획을 이행하지 않은 자가 포함되고, 공연장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가 상향 조정 됩니다.
 -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공연법 개 정안」국회 통과

2015년도 공연법 주요개정 사항

■ 추진배경 : 현행법상 미비점 보완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규정 마련을 통한 국민의 안전한 공연관람 환경 조성

주요내용

- ① 공연장 등록 대상 확대(객석 수 50석 또는 객석 바닥면적 50㎡ 이상→모든공연장)
- ②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관리 강화(1년 단위 갱신, 지자체 보완 요구 가능)
- ③ 무대시설 안전진단 대상 확대 및 강화
- ④ 안전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강화
- 시행일 : 2015년 11월 19일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이 보다 강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과(☎ 044-203-3138, 3156) ·

- 국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의 안전이 강화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체육시설 안 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을 통해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관리 위탁기관을 통하여 운용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관리자는 체육시설의 안전성이 지속되도
 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사항

- ① 체육시설에 대한 중기·장기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 ② 체육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 ③ 체육시설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④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되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시행일: 2015년 8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시행('15.11.19)으로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 044-203-2514)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으로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하고 국가 전체의 행복 수준과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 이 법률은 국민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을 권리와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여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책무를 규정하고.
 - 여가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여가프로그램 및 여가정보의 개발·보급, 국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시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법률 제정·시행을 통해 국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가 정책의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었으며, 여가 관련 정책 사업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에도 행복지수*로 표현되는 국민의 삶의 질은 낮은 수준이며 OECD 국가 중 평균 노동시간**이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차지
- * 행복지수 34개국 중 27위('12년, OECD), 행복도 150개국 중 56위('12년, 유엔 세계행복보고서)
- ** 한국인의 근로시간 평균 2,163시간으로 34개 OECD 국가 중 2위(1위 멕시코, 2,237시간, OECD 평균 노동시간 1,770시간)
- 또한, 100세 시대 도래에 따라 전 생애주기에서 여가 시간이 급격하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가 선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주요내용

- ①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가 등의 책무, 일과 여가의 조화(제1~5조)
- ② 여가활성화를 위한 문화정책 규정(제7~제14조)

- 여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조사 및 연구,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교육의 실시, 여가시설의 공간과 확충 등
- ③ 여가 확산을 위한 지원 규정(제15~제17조)
- 여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 및 개인 지원, 우수 기업 시상, 여가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 시행일 : 2015년 11월 19일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시행('15.11.19)으로 문화산업으로서의 체계적·통합적 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 044-203-2752)

-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국가적 책무로 명시하고,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제작 지원, 유통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어 문화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공예문화산업에서 활용되는 재료에 대한 연구개발이 공예품의 품질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련 소재산업 발전과도 연계될 수 있기에 공예 소재 개발과 이를 활용한 공계 기술 개발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국적불명의 저가공예품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문화적 요소와 미적 가치가 담겨 져 있는 "우수공예품 지정제" 실시를 통해 차별화된 한국공예품 유통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 2015년 도자분야를 시작으로 금속, 유리, 섬유, 목공예 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전통공예와 현대공예를 융합하고 참신한 현대적 디자인을 가미한 고품격 공예품
 제작자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지원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법적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044-203-2812)

- 지역관광협의회를 통해 지역 공동체 및 수요자 중심의 협력적 지역관광 거버넌스를 구축 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역관광 진흥의 주체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실질적인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지역관광협의회 설립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지역관광협의회 경비를 지자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관련 법적 근거(관광진흥법)

-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 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⑤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①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5.18.] [시행일 : 2015.8.19.]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진흥과 (☎ 02-2110-1841)

- 2015년 3월 제정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 침해사고, 정보 유출 및 일정 기간 서비스 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클라우드컴 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알려달라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동의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이 종료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려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를 반환하고 파기하여야 합니다.
 - 클라우드컴퓨팅의 이용 활성화와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확** 대 **추진**됩니다.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연구개발, 중소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산업단지 조성 등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진흥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 각종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 시범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도입 촉진 등을 통해 **클라우드컴퓨팅의** 이용과 보급의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현행법령〉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의 주요내용

- 추진배경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보호 및 산업 진흥
- **주요내용**
 - ①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 시범사업, 세제지원, 중소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클라우 드컴퓨팅 산업 진흥
 - ② 시범사업, 국가기관 등의 도입 촉진 등을 통한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 보급 확대
 - ③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정보 유출시 통지 등 이용자 정보 보호 강화
- 시행일 : 2015년 9월 28일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로 공공정보화사업의 민간침해 방지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 02-2110-1834)

-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반영하여 공공정보화 사업의 **기획단계부 터 민간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15년 상반기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행계획을 검토하였으며, '15년 하반기에는 광역 자치단체(총 17개)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공공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기관공동사용형과 대국민서비스형으로 분류하여 민간시 장 침해여부를 검토 후 사업재검토 및 실행유의사업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 또한,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을 통해 접수된 공공발주 불공정행위** 중 민간시 장 침해부분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수행합니다.
 - ☞ (참고)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자료실〉2016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

2016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

- 추진배경 : 국가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관별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 로 주요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 등 55개 기관의 정보화사업 대상
 - ②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우선투자사업 식별, 사업간 연계·통합 필요성 및 중복성,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등 검토
- 발표일 : 2015년 3월 31일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발주기술지원서비스 제공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 02-2110-1834)

- 공공 SW사업 발주시 발주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업무 요구, 불합리한 사업대가 및 기간 산정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소프트웨어발주기술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발주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프트웨어발주기술지원센터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공공 SW사업의 발주 및 관리 전 과정에 걸쳐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합니다.
 - 예산수립 단계에서 상세 요구사항 도출, 제안요청서(RFP)작성, 사업규모 및 비용산정 등을, 사업수행단계에서 과업변경 발생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지원합니다.
 - 발주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공학센터 내 전문가, 민간 전문가, 발주 분야에 정통한 퇴직 시니어로 구성되며, 개별 사업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올해에는 건설·교육·행정 등 발주기술지원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 50개 사업을 발굴 하여 중점 지원하며, 매년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사업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통합・체계화

미래창조과학부 SW정책과 (☎ 02-2110-1813)

- 다양한 분야별로 개별 추진되었던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사업들을 「소프트웨어 중 심대학」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전공교육 강화, 산학협력 활성화 및 소프트웨어 융합인력 양성 등 고급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 향후 공모(7월 예정)를 통해 현재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대학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의 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 현재 지원을 받지 않는 대학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모·평가를 통해 신규 지원 대 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 (참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주요사업〉사업공고〉2015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모집 공고(안)(7월 중순 이후 확인 가능)

「SW중심대학」지원 개요

- 추진배경 : 다양한 대학 소프트웨어교육사업을 대형화·체계화하여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전공교육 강화, 산학협력 활성화 및 소프트웨어 융합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소프 트웨어 중심대학」으로 통합 지원 추진
 - 공모를 통해 기존 사업참여 대학 중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의 전환대상 및 신규 참여대학 선정
- 시행일 : 2015년 7월

SW창의캠프를 확대 시행,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SW교육 기회를 제공

미래창조과학부 SW교육혁신팀 (☎ 02-2110-1805)

- SW창의캠프가 지난 2년간 확인된 참여열기를 반영하여,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15년 7월부터 '16년 2월까지 대폭 확대 시행됩니다.
- '13년 100명(1회), '14년 200명 (2회)이었던 참가인원을 '15년 1500여명 (14회)으로 늘리고, 기초캠프(12회)와 심화캠프(2회)로 단계적으로 운영됩니다.
- 전국의 학생들에게 동등한 참여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캠프를 전국 4대권역(①수도 권②강원·충청③호남④영남)에서 실시합니다.

〈기초캠프 일정〉

권역	일정	장소	
가이 초워긔	7월 17일(금), 18일(토)	KAIST대전본원 창의학습관	
강원·중청권	8월 13일(목)	강원도 춘천교대 광주 과학기술원	
호남권	8월 14일(금), 15일(토), 16일(일) 광주 과학기술원		
수도권	9월 18일(금), 19일(토), 20일(일)), 19일(토), 20일(일) 경인교대 안양캠퍼스	
را الحداد	10월 16일(금), 17일(토)	대구교대 부산교대	
영남권	10월 18일(일)		

- 기초 캠프는 참가자들이 SW교육에 흥미를 느끼고 체험을 통하여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SW교육의 필요성을 주제로한 특강을 제공합니다.

〈 기초캠프 예시 〉

구분	호기심 유발	체험 활동	교육 입문
교육 내용 (예시)	(흥미유발 프로그램) 실생활에 반영된 SW 사례 공유 및 언플러그드 체험 활동 등	(SW체험교실) 로 봇축구 조종(알버트), 춤추는 로봇 관람 등	(SW기초놀이) 스크래치, 파이썬, 아두이노 등 기초 프로그래밍 과정 실습

• 심화캠프는 학생들이 SW와 관련하여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SW 집중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SW기초역량을 이끌어내고, SW관련기관 방문기회를 통해 SW분야로의 진로탐색기회를 제공합니다.

〈 심화캠프 예시 〉

구분	체험 활동	응용 실습	실전 창작
교육	(SW나들이)	(SW실습교실)	(SW응용교실)
내용	ETRI, 디지털 파빌리온 등	스크래치, 파이썬,	축구로봇,SW악기 등
(예시)	SW 관련 기관 견학	아두이노 등 교육	HW에 적용하는 실습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진입규제 완화 및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가족관계 확인 절차 간소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2-2110-1523)

-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진입규제 완화** 및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가족관계 확인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위치정보법이 '15.8.4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도 신고 대상이었으나, '15.8.4 이후부터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긴급구조시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해 가족관계 확인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위치기반서비스사업 진입규제 완화 및 신속한 기급구조를 위한 가족관계 확인 절차 간소화

2015년도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

- 추진배경 :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진입규제 완화 및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절차 마련
- **주요내용**
 -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대상 제외
 - ②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행일 : 2015년 8월 4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자 의무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2-2110-1521)

-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어 사업자의 의무가 다음과 같이 강화됩니다.
 - 개인정보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취급 하는 사업자들은 금년 8월 18일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 기하거나 별도 분리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정보통 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2015년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자 의무 강화 항목

- 추진배경 :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사업자 의무를 강화
- **주요내용**
 - ① 개인정보 유효기간 단축(3년→1년)
 - ②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거부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1천만원 이하→3천만원 이하)

■ 시행일

- ① 개인정보 유효기간 단축(3년→1년): 2015. 8. 18 시행
- ②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거부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1천만원 이하→3천만원 이하): 2015, 12, 23 시행

08 농식품·식약

농어촌 민박 조식 제공 허용 및 서비스 · 안전 교육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044-201-1590)

- 농어촌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 민박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 지금까지는 농어촌 민박 운영 시 이용객을 대상으로 음식의 판매가 불가능했지만, 이용객 편의 제고를 위해 금년 7월7일부터 **농어촌 민박**에서도 **조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아울러, 농어촌 민박의 안전·서비스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숙박 및 식품위생·소방 안전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 민박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서비스·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 화** 하였습니다.
 - 참고로, 농어촌 민박 사업자가 서비스·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농어촌정비법」

농어촌 민박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농어촌 민박 이용객 편의 제고 및 서비스·안전 품질 향상
- 로 주요내용
 - ① 조식 제공 허용
 - ② 숙박 및 식품 위생·소방안전 등 사업자 준수사항 마련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서비스·안전 교육 이수 의무 부과
- 시행일 : 2015년 7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시행(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044-201-1574)

-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재산수준 등(보험료 부과점수)을 고려하여 보험료 차등 지원을 시행합니다.
 - 지금까지 소득·재산수준에 관계없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정률(28%)로 지원하였으나, 고소득·고액 재산가 일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관련 법 및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금년 **8월부터는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 가입자의 95%(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는 정률(28%) 지원(현행)
 - 상위 4%(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0점)는 정액 지원
 - 최상위 1%(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는 지원 제외
 -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 추진배경 : 건강보험료의 차등지원을 통해 지원의 형평성 도모
- **주요내용**
 - ① 소득ㆍ재산수준(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8월부터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추진
 - 가입자의 95%(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는 정률지원(현행)
 - 상위 4%(1.801~2.500점)는 정액지원
 - 최상위 1%(2,501점 이상)는 지원배제
 - 시행일 : '15년 8월 이후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범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044-201-1574)

-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영농도우 미 지원사업의 지원범위가 확대됩니다.
 -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또는 최근 2년 이내 암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하는 농업인에게 지원(최대 10일)하는 사업으로,
 -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대상이 되는 **통원치료 중인 중증질환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 먼저, 대상 질환을 **암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 환)으로 확대하고,
 - 지원 요건도 현재 3개월 이내 4회 이상 통원치료자에서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 료자까지 완화** 지원합니다.
 -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범위 확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 추진배경 : 영농도우미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로 주요내용
 - ① 최근 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은 자로 통원치료(3개월 이내 4회 이상)
 - → 암 포함 4대 중증질환자로 통원치료(3개월 이내 2회 이상)
 - 시행일 : '15년 8월 이후

* 국산 미곡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신설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044-201-1820)

-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7월 7일부터 국산과 수입산 미곡간 혹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간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됩니다.
 - 현재는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서로 다른 쌀을 혼합하여 유통·판 매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원산지 및 생산연도의 혼합비율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원산지를 속이거나 혼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 앞으로는, 국산 미곡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 * 미곡은 벼, 현미, 쌀로서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 포함)
 - 혼합 유통·판매의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정부양곡 매입자격 제한 및 양곡가공업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가 신설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 추진배경 : 쌀 부정유통 방지 및 유통거래질서 확립
- 주요내용
 - ① 국산 미곡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금지
 - ②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금지
 - ③ 처벌규정 강화(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 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벌금)
 - * 미곡은 벼. 현미. 쌀로서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 포함)
- 관련법령 : 양곡관리법 제20조의4(양곡의 혼합 금지)
- 시 행 일 : 2015년 7월 7일

*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면세유에서 경유 제외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044-201-1840)

- 금년 **7월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을 제한**합니다.
 - 이미 2010년 1월부터는 신규 난방기에 대해. 2011년 7월부터는 중고로 취득한 난방기 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을 제한하여 왔으며,
 - 2015년 7월부터는 기존 제도를 확대하여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 급을 제한합니다.
 - 경유 이외에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그 밖의 면세 유종인 등유, 중유, LPG 및 부생 연료유는 그대로 계속 공급하며.
 - 난방기가 아닌 그 밖의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 곡물건조기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공급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업 난방용 면세유종 변경
 - ※ (관련법령)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법령〉「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 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부칙 제3조(15.3.13 개 정ㆍ공포)

'15.7.1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면세유에서 경유 제외

- 추진배경 : 이미 등유로 전환(10.1)한 농업경영체와의 형평성, 유종별 사용목적(경유는 디 젤엔진용, 등유는 난방용), 면세 경유 부정유통 방지 등을 고려
- 주요내용
 -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을 제한
- 시행일 : 2015년 7월 1일

2015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044-201-1720)

■ 2015년도 FTA 직접피해 지원품목으로 지정된 아래 품목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 원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대상 품목	비고
피해보전직불금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9개
폐업지원금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5개

-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개월 동안(6.18~8.17) 거주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 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공지·공고〉2015년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대 상품목 지정

2015년도 피해보전직접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 추진배경 :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으로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주요내용 :
 - ① 피해보전직불금: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이 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 보전
 - ② 폐업지원금: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할 경우 3년간의 순이익을 지원
- 시행일 : 2015년 6월(접수 : '15.6.18.~8.17, 지급일 : '15.12월 예정)

콩·양파·포도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 시범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044-201-1780)

- 금년 6월부터 농가의 품목별 수입(收入, Income)을 일정 수준 보장해주는 **'농업수입보** 장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보험상품 개요
 - 자연재해 또는 가격하락으로 인한 대상 품목의 조수입 감소를 보상
 - ◇ 지급보험금 = 기준수입×보장수준 실제수입
 - 기준수입 = 평년(예상)수확량 × 기준가격
 - 실제수입 = 수확기 실제수확량 × 수확기가격
 - 기주가격 및 수확기 가격은 농가별 판매가격이 아닌 서울 양곡도매 시장 등의 시장 평균가격을 기초로 산출
 - 평년 수확량은 농가별 과거수확량과 표준수확량을 기초로, 수확기 실제수확량은 가입 농가의 당년도 수확량으로 산출
- 대상품목 및 지역 : 2015년 3개 품목(콩, 양파, 포도), 14개 시군
- 가입기간 : (콩) 6.5 ~ 7.17, (양파·포도) 11.1 ~ 11.30
- 보험가입 장소 및 문의처 : 관내 지역농협(☎ 1644-8900)
-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콩·양파·포도 농업수입보장보험 판매

콩、양파、포도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 판매 개시

- 추진배경 : 자연재해 또는 가격하락으로 인한 조수입의 감소 보상
- **주요내용**
 - 콩・양파・포도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실시
- 시행일 : 2015년 6월부터(콩 : 6.5~7.17, 양파·포도 : 11.1~11.30)

「해외농업 · 산림자원 개발협력법」개정 ·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 044-201-2040)

- 농업분야 및 산림분야 해외자원개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해외농업개발협력법」을「해외 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으로 개정・시행합니다.(2015년 7월)
 -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관련 업무를 농업분야와 산림분야로 구분하여 정비하고, 국제 협력사업의 범위를 외국의 임업·산촌지역 개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 우선,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현지법인 현황 신고제도 를 폐지**하였으며,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 운용인력의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아울러,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 등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해외농업 ·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

- 추진배경 : 농업 및 산림분야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및 투자 촉진
- **주요내용**
 - ①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현지법인 현황 신고제도 폐지 및 관련 분야 집합 투자업자의 인력 요건 완화
 - ②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 등의 설립 근거 마련
- 시행일 : 2015년 7월 21일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 관리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044-201-1384)

- 7월 7일부터 **농업보조금으로 지원된 재산은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사실** 및 **임의처분** 제한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 기재 예시) 동 재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것으로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OO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원재산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은 통상적으로 건물·토지는 10년, 기계·장비 등은 5년간 재산권 행사 제한
 - *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재산 처분 시 기지원한 보조금은 환수
 - 하지만, 그동안 보조금으로 지원된 재산에 대해 임의적으로 처분하는 사례가 있어, 보조금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농업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부기등기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이를 통해,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정보를 명시하게 함으로써 보조사업자가 재산을 임 의로 처분하는 사례를 미역에 방지하고.
 - 국민세금으로 지원한 농식품 관련 시설이 목적대로 활용되어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시행

■ 추진배경 :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의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주요내용 :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건축물 등 재산의 등기서류에보조금을 지원받

은 사실 및 제한사항 등을 기재

■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부기등기 등)

■ 시행일 : 2015년 7월 7일

「농식품·중소기업 전용홈쇼핑」개국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a** 044-201-2217)

- 금년 7월,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에 획기적 역할 수행할 「농식품・중소기업 전용 TV 홈 쇼핑」을 개국합니다.
 - TV 홈쇼핑은 생산자-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농산물 직거래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 고유 채널을 활용하여 정해진 시간에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한 **안정적인 농식품 유통 시** 스템입니다.
- 홈쇼핑의 개국으로, 각 지역의 농축수산물 및 농촌관광 **상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 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중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농산물 생산량 증가 시, TV 홈쇼핑을 통한 **즉각적인 물량 소진**이 **가능**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고,
 - 소비자 선호에 맞는 농식품의 가공·표준화·규격화 등 **상품화 진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식품·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개국

농식품·중기 전용 홈쇼핑 개국

- 추진배경 : 농축수산물 판로 확보와 수급안정 등을 위해 개국 추진
- **주요내용**
 - ① TV 홈쇼핑 방송을 통해 생산자-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고, 정보를 제공받음
 - ② 농산물 가격하락 등의 물가변동 시, 즉각적인 물량 소진이 가능하여 수급안정에 기여
- 시행일 : 2015년 7월(개국 준비 중)

1 · 2등급 의료기기 위탁 신고 · 인증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043-230-0419)

- 그간 위해도와 관계없이 정부에서 전담하던 의료기기 허가·신고 업무를 2015년 7월 29 일부터 위해도에 따라 정부 및 민간기관에서 선택과 집중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 인공심장박동기 등 위해도가 높은 3·4등급 의료기기는 식약처에서 허가하고, 수동식 휠체어 등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가 거의 없거나 낮은 1·2등급 의료기기의 신고·인증 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 수행토록 함으로써
 -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 의료기기법 제42조에 의해 설립된 식약처 유관기관
 - 정부는 고위해도 의료기기에 허가업무 역량을 집중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저위해 도 의료기기는 기존 허가처리 기간보다 5일 단축된 기간으로 인증하여 제품의 조기 시장진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 *「의료기기법」개정·공포('15.1.28), 시행('15.7.29)
 - ☞ (참고)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 시행령, 시행규칙〉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15.1.28)

저위험 의료기기 위탁 신고·인증제 도입

- 추진배경 : 의료기기 위해도에 따라 허가업무를 정부 및 민간기관에서 선택과 집중하여 관리하기 위해 1·2등급 의료기기 위탁 신고·인증제 도입
- **주요내용**
 - 3 · 4등급 고위해도 의료기기 허가는 정부 역량 집중하여 안전관리 강화
 - 1·2등급 저위해도 의료기기 신고·인증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위탁 수행
- 시행일: 2015. 7. 29

주류제조업체 2015. 7.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준수의무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안전관리기획단 (☎ 043-719-6052)

-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13. 7. 1일부터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등록을 실시하고 시설기준은 2년의 유예를 적용하여 2015. 7. 1일부터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주류제조업체는 「주세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담금·저장·제성용기 구비 등 최 소한의 기준을 준수 하였으나,
- 주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국민적 요구에 맞춰 위생관리 중심의「식품위생법」시설기 준을 준수하여 **안전한 주류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관련 [별표 14] 제1호('15.7.1.시행)

주류제조업체 안전관리 시설기준 강화

- 추진배경: 주류안전관리 필요성 요구에 따라 주류 제조업체를 일반 식품제조업체와 동일
 한 수준으로 관리하여 주류의 안전성 확보
- **주요내용**
 - 주류제조업체는「식품위생법」시설기준(건축물 위치,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등, 급수시설, 화장실, 창고 등의 시설, 검사실, 운반시설)을 준수하여야 함
- 시행일 : 2015. 7. 1.

인체조직 전주기 프로세스 통합추적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 043-719-3656)

- 인체조직 채취·가공·보관·분배·이식 전주기에 걸쳐 신속히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통합전산망이 구축**됩니다.
 - 현재는 조직은행의 채취, 관리,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이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인체조직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추적관리에 한계가 있었으나,
 -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을 구축하여 '15.12월부터 체계적인 추적관리 및 부작용 보고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 실시간 추적 시스템 구축함으로써 **인체조직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 인체조직의 안전관리수준이 향상됩니다.

인체조직 안전관리 통합전산망 구축

- 추진배경 : 인체조직의 전주기 프로세스를 통합추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으로 안전 성문제 발생시 실시간 추적 및 분석 필요
- **주요내용**
 - 인체조직 채취·가공·보관·분배·이식 전주기에 걸쳐 신속히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통합전산망 구축
- 시행일 : 2015년 12월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 영업자 및 기타식품판매영업자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 043-719-2855)

- '15. 12. 1.부터 국내에서 제조(가공)되거나 수입되는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이 2단계 의무화됩니다.
-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가공영업자는 '14. 12. 1.부터 '17. 12. 1.까지 단계적으로 이력추적관리등록이 의무화 됩니다.
- 1단계로 '14. 12. 1.부터 매출액 50억 이상인 제조·수입·가공업자, 영업장면적 1,000㎡이상인 기타식품판매영업자에 대해 의무화가 시행중에 있고,
- 2단계로 '15. 12. 1.부터 매출액 10억 이상인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 가공업자와 영업장면적 500㎡이상인 기타식품판매업업자에 대해 식품이력추적관리등 록이 의무화 됩니다.
- 이력추적관리등록이 확대 시행됨으로서 안전한 식품 제조 분위기 조성과 함께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회수 등 사후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식품이력 추전관리 제도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제고
- 주요내용
 - ①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가공)·수입단계 및 판매단계에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도입
 - 「식품위생법」제49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2에 따라 매출액 10억이상인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수입하는 영업자 및 매장면적 500m2 이상인 기타 식품판매 영업자
- 시행일 : 2015.12.1.

목재·제지 산업 분야 KS 표준 업무, 산림청 이관

산림청 목재산업과 (☎ 042-481-4291)

- 목재·제지 산업 분야 KS 표준 업무가 금년 7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림청으로 이 관됩니다.
 - 지금까지 모든 KS 표준 관련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합 관리하였으나, KS 표준 및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 간의 유사·중복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부처에서 KS 표준과 KS 인증 업무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 산림청은 목재·제지 산업 관련 430개 KS 표준과 27개 품목 KS 인증 관리
 - KS 표준이 산림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인증을 KS 인증으로 통합하여 산 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목재제품 품질인증 8개 품목 중 4개 품목은 KS 인증으로 통합 추진하고, 4개 품목은 KS 인증 품목으로 확대 지정
 -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범부처 참여형 KS 표준 운영방안

- 추진배경: KS 표준 및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인증제도 간 유사·중복이 존재하여, 정부 행정비용 낭비 및 기업과 소비자 혼란 가증
- **주요내용**
 - ①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를 도입하여 KS 표준을 각 부처에서 관리
- 시행일 : 2015년 7월 29일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개발 제한 규정 폐지

산림청 산지관리과 (☎ 042-481-4142)

- 산지전용허가 시 250미터 이내의 **연접개발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산지 내 산업시설 증설** 등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50미터 이내의 기존 산지전용허가지를 포함하여 3만 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하도록 한 현행 연접개발제한 규정이 폐지됩니다.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규정 개정

- 추진배경 : 연접개발제한 규정이 기득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투자를 제한하는 문제 점이 있음
- **주요내용**
 - ① 산지전용허가시 250미터이내 기존허가지 면적을 포함하여 3만제곱미터이상의 산지전용을 제한한 규정을 폐지
 - ② 기존허가가지의 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함
- 시행일 : 2015년 9월 28일(잠정, 법령개정 중)

임업용산지에서의 산림레포츠시설 등 설치 허용

산림청 산지관리과 (☎ 042-481-4142)

-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서 「산림휴양법」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 및 야영장 시설의 설 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보전산지에서 야영장 등의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 치를 허용합니다.
 - 산지를 불법전용하여 운영하던 야영장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제도권 내에서 안 전한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또한, 임업용산지에서 가축의 방목뿐만 아니라 **방목지 내**에서의 목초종자의 파종행위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 임업용산지에서 가축의 방목만 허용하였으나, 가축방목지 내 목초종자 파종까지 허용하여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가축사육 환경조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전사지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추진배경 : 산림레포츠 및 캠핑문화 확산과 생태산지축산의 활성화를 위함
- **주요내용**
 - ① 산림레포츠시설 및 숲속야영장을 임업용산지에서 허용
 - ② 방목지내 목초종자 파종허용
- 시행일 : 2015년 9월 28일(잠정, 법령개정 중)
 - ※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시행일부터 가능 ('16.1.21, 시행)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운영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 042-481-4094)

- 국유림 **무단점유자의 변상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국유림 관리를 위해 **무 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 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임시특례는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2년간) 운영됩니다.
 - 주거용·종교용 시설부지 및 농지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점유된 국유림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대하여 지목을 현실화하여 국유림 대부할 계획입니다.
 - 임시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국유림 이용료는 당초 변상금 대비 17%가량 감경될 전망입니다.
 - 다만, 아래사항을 충족할 경우 임시특례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시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점유·사용 하고 있는 자(상속자 또는 그 밖에 포괄승계자 포함)에 해당 할 것
 - * 임시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면적
 - 주거용 시설부지
 - 특별시·광역시 : 5백제곱미터 이하
 - 그 외 지역: 1천제곱미터 이하
 - ㅇ 종교용 시설부지
 - 2천제곱미터 이하
 - 관련법에 따른 전통사찰이며, 해당 무단점유지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면적 이내
 - ㅇ 농지
 - 특별시·광역시 : 5천제곱미터 이하
 - 그 외 지역 : 1만제곱미터 이하
 -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 추진배경 : 국유림 무단점유자의 변상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국유림 관리 도모

로 주요내용

- ① 10년 이상 무단점유되어 산림으로 환원이 어려운 국유림을 무단점유자가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특례 운영
- 시행일 : 2015년 9월 28일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제도 신설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042-481-4248)

- 정원 관련 산업의 육성과 정원문화의 진흥을 위해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제도가 2015년 7월 21일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 정원은 조성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으로 구분**하고, **지방** 정원이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 지방정원과 일반에 공개하는 민간정원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민간정원의 보존가치가 있는 식물의 보존·중식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원산업 연구개발 및 정원소재 유통개선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정원 내 에 정원지원센터 설치 · 운영할 계획입니다.
 -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제도

- 추진배경 : 정원산업 육성 및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정원 정책 시행
- **주요내용**
 - ① 정원의 조성주체에 따라 정원을 구분하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
 - ②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정원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정 원내 정원지원센터 설치·운영
- 시행일 : 2015년 7월 21일

소나무재선충병 관리강화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 042-481-4038)

-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확대하고,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소나무재선충병이 2개 이상 행정구역 또는 국·공유림과 사유림에 걸쳐서 발생하거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직 접 방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

- 추진배경 :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강화 및 피해확산 방지
- 주요내용
 - ①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에 대한 국가 직접방제
 - ②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 설치
 - ③ 공무원 등이 타인의 토지사용・출입 및 사용 가능
 - ④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시행과 위탁 또는 대행 제도 도입
 - ⑤ 모두베기 방제사업 시행시 사유입목 매수 제도 도입
 - ⑥ 부실시공자에 대한 벌칙 강화
 - ⑦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도 도입
 - ⑧ 산지전용 시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 제출 의무화
- 시행일 : 2014년 6월 22일

09 인사·법무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맞춤형 정책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 02-2100-6957)

-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 공무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장애인공무원을 지원할 예산확보 등의 근거법령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국가 공무원법 개정(5.18)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2015년 하반기부터(9.19 국가공무원법 시행)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 은 업무 시 점자프린터, 시각장애인용 계산기(시각), 화상 및 문자전화기(청각) 등 보조 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고, 보조역할을 해주는 근로지원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장애인공무원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가능해진다

장애인공무원 지원항목

- 추진배경 :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 공무원들과 동등한 조건에 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 제공
- **주요내용**
 - ①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근로지원인 활용
- 시행일 : 2014년 하반기(잠정)
 - * 장애인 맞춤형 지원 관련 하위법령 개정 추진, 국가공무원법 시행(9.19) 이후 지원자 발굴 및 지원대상항목 선정 등을 거쳐 지원 예정

민간인만 임용 가능한 개방형직위 운영 등 공직 개방성·전문성 확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 02-2100-6785)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정부는 국·과장급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개방형 직위에 민간임용은 높지않아 '무늬만 개방'이라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 이에 2015년 하반기(관련규정 개정이후) 부터는 공직사회의 실질적 개방성과 전문성을 확대를 하고자
 -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경력개** 방형 직위 운영, 국민인재 스카웃제 확대, 성과 탁월한 민간임용자에 대한 일반직공 무원으로 전환 등의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 (참고) 1.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 7월 중 게시 예정
 - 2.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 등 개방형 직위 제도 개편

- 추진배경 : 공직사회의 실질적 개방성·전문성 확대
- **주요내용**
 - ① 민간인만 모집대상으로 하는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운영
 - ② 국민인재 스카웃제 확대(대상확대:실장급→과장급, 면접예외 확대: 실장급→국장급)
- 시행일 : 2015년 7월(잠정, 7월초 차관·국무회의 상정 예정)*
 - ※ 입법 진행중, 예산 심의중 등의 사유로 시행여부, 시행일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 표시와 함께 진행상황 기재 요망

국가직 공채 면접시험 대폭 강화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 02-2100-6822)

- 스펙 위주의 채용 관행을 지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공직가치관과 직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공무원 선발을 위해,
 - 국가직 공무원의 공개채용 면접시험이 공직가치관과 분야별 직무능력을 심층 검증하는 방향으로 강화됩니다.
- 모든 공채의 면접시험에서 「공직가치관·인성 면접」 비중을 확대하고, 공직가치관 검증에 특화된 다양한 유형의 면접질문(토론・발표과제, 상황·경험형 질문)과 평가체계를 활용하며,
- 면접시험 응시대상을 예년보다 '선발예정인원 10%(5급: 130% 수준, 7·9급: 140% 수준)' 정도 늘려 당락에서 차지하는 면접시험의 비중을 높일 계획이며,
- 면접시험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1인당 면접시간을 확대하는 등 면접시험 운영 방식을 전면 개선될 예정입니다.
 - 5급 공채는 2단계 심층면접체제로 진행되고, 7급 공채에는 집단토의 면접이 새롭게 도입되며, 9급 공채도 5분 스피치 평가가 신설되는 등 면접 운영방식이 한층 강화됩니다.
 - ☞ (참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홈페이지〉〉시험안내〉시험공고/공지사항

양식 2

「신·구 대비표」

※ 집단토의/개인발표/5분스피치 평가 시간은 수험생의 자료 작성시간이 포함된 시간임.

	구 분	종 전	개 선
		135분	240분 (+105분)
	매기기기	집단토의/60분	집단심화토의/110분
• -	면접시간/ 면접방식	개인발표/45분	그룹별 개인발표/50분
5급		개별면접(공직가치/직무능력)/ 30분	개별면접(공직가치/직무능력)/ 80분(2회 / 40분씩)
	면 접응시인원	120% 수준	130% 수준
		70분	120분 (+50분)
	면접시간/ 면접방식	-	집단토의/60분
		개인발표/40분	개인발표/30분
7급		개별면접(공직가치/직무능력)/ 30분	개별면접(공직가치/직무능력)/ 30분
	면 접응시인원	130% 수준	140% 수준
		30분	50분 (+20분)
	면접시간/	-	5분 스피치 평가/15분
9급	면접방식	개별면접(공직가치/직무능력)/ 30분	개별면접(공직가치/직무능력)/ 35분
	면 접응시인원	130% 수준	140% 수준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제도 도입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167)

-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15. 7. 1. 시행됩니다.
 -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를 재량화함으로써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절차 기간을 약 3개월 단축하고,
 - 30억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하여는
 -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①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또는 ②의결권 총액 과반수 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하여 회생계획안이 쉽게 가결될 수 있게 하고,
 -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이용하여 평균 2,000만원이 소요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뉴스〉보도자료〉30억 원 이하 채무자 「간이회생제도」 이용 가능

2015년도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채무 관계가 단순함에도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함
- **주요내용**
 - ①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의 재량화(회생절차기간 약 3개월 단축)
 - ② 회생계획안 가결요건 완화
 - ③ 간이조사위원제도 신설(조사위원 선임비용 약 2,000만원 절약)
- 시행일 : 2015년 7월 1일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실시

법무부 형사법제과 (☎ 02-2110-3558)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이 진행중인 가정폭력피** 해자도 지역 경찰서로부터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까지 신변안전조치는「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등 일부 법률에서만 인정되는 제도 였으나, 개정 가폭법에 따른 가폭법 시행령이 2015,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의 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 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등의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피해자의 주거에 대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는 2016. 1. 1.부터 시행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법령〉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참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 민사집행법 개정,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저당권 설정 가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

- "항공기" 외에 "경량항공기 등"까지 저당권의 대상물을 확대하고,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저당권 실행 절차 및 강제집행 절차를 마련됩니다.
 - 법무부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및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였던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이외에 '그와 재산적 가치에 큰 차이가 없는' 경량항공기 및 기타 항공기(활공기, 비행선, 항공우주선)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 법률은 '15. 4. 30. 국회를 통과하여 5. 18. 공포되었으며, 6개월 후인 11. 19. 시행됩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통한 자금융통 및 사업 확장의 길이 열리게 되어 항공 레저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여가생활이 더욱 풍요로 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한 친권 정지ㆍ제한 제도 도입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

- 부모의 친권남용과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의 행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16일 부터 친권의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등 제도가 도입됩니다.
 - 친권의 일시 정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친권을 정지하고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 친권의 일부 제한 제도가 도입됩니다.
 - 부모가 자녀의 치료 및 의무교육을 거부하는 등 특정 사안에 대하여 친권을 부당하 게 행사하는 경우, 특정한 범위에 한정하여 친권을 제한하고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 제도가 도입됩니다.
 - 수혈이 필요한 수술동의 등 1회성 행위에 관여가 필요한 경우, 친권은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가정법원이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친권 상실 등의 청구권자를 확대하였습니다.
 - 친권 상실·정지 등의 청구권자를 기존의 검사 및 친족에서 자녀 본인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 ☞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한 친권 정지·제한 제도 도입

강력사범에 대한 경찰과의 정보공유 강화

법무부 보호법제과 (☎ 02-2110-3330)

- 법무부와 경찰 간의 정보공유 범위 확대에 따라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경찰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종료되더라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 이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5. 7. 1.부터 강력범죄 자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도 시행으로 위험성이 높은 **살인·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 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경찰과 공유**함으로써 **강력범죄자의 재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저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

강력사범에 대한 경찰과의 정보공유 강화

- 추진배경 : 법무부와 경찰 간의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여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 저을 보장
- **주요내용**
 - ① 살인ㆍ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 경찰과 공유
 - ② 대상범죄: 살인, 성폭력, 유괴, 방화, 조직폭력, 마약범죄
 - ③ 공유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죄명, 판결내용. 보호관찰 종료일
- 시행일 : 2015년 7월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부173	외교부201
산업통상자원부176	국가보훈처202
특허청178	국방부203
국세청178	방위사업청204
관세청179	병무청205
중소기업청179	문화체육관광부206
환경부180	미래창조과학부209
기상청182	방송통신위원회211
국토교통부183	농림축산식품부212
해양수산부186	식품의약품안전처215
보건복지부190	산림청216
여성가족부197	인사혁신처218
고용노동부199	법무부219
통일부20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획	재정부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보완 및 조정	□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15.7.1)
	/단스도 현산성구	-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근 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 의 120% 또는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 4152)
	□ 매월 원천징수하는 근로 소득세	□ 원천징수세액 조정	
	 (근로소득공제, 기본공 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세율) 실제 금액·세율 반영 	ㅇ(좌 동)	
	(특별공제) 산식에 따라 공제		
	- 1인·2인가구 동일 산식 적용	- 1인가구 특별공제 산식 신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 료〉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15.6.4)	
전자계산서 발급 및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 서 발급 및 전송이 가능		소득세법 ('15.1.1)
전송 의무화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및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자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 4151)
		□ 의무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진발급시 건당 200원 세액공제 ☞(참고)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안	
3. 농업회사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보완	법인·영어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과세특례 농업인 요건 정비 ○ (좌 동) ○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 (농업회사법인에도 적용)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경우 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 ○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 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 으로 간주 * 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	조특법 ('15.7.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 4213)
		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참고)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안	
4. 금융 · 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 다음 금융·보험용역은 과세전환	부가가치세법 ('15.7.1)
보완	 은행업 예·적금, 대출 등 보호예수 금융투자업 	- (좌 동) - (과 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 4232)
	- 집합투자업 등 - 신탁업 - 투자일임업	- (좌 동) - (부동산·실물자산 운용시 과세) - (부동산·실물자산 운용시 과세)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투자자문업	- (과 세) - (좌 동) - (좌 동) - (과 세)	근세 구시
	- 손해사정용역 등 - 보험계리용역	☞(참고)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5. 금 스크랩 매입자납부특례 도입	□ 금 스크랩 매출자납부 ○ 금 스크랩 거래시 매		조세특례제한법 § 106의4
	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 과세관청에 납부	가가치세를 금융기관에 입금하고 금융기관이 직접 과세관청에 납부 홈페이지〉보도자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044-215- 4233)
		료〉2014년 세법개정안	
1. 전자지급결제대행 업자(PG)의	□ PG의 외국환업무 불가 ○ (직구) 글로벌카드로	□ PG의 외국환업무 영위 가능 ○ (직구) 국내전용카드로도 구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업무영위	만 결제 가능 o (역직구) 해외 결제사 와 직접적인 계약관 계를 맺은 일부 대형	가능 ○ (역직구) 중소 인터넷 쇼핑몰도 해외 판매 가능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 료〉2015.7.1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44-215- 4751)
1. 긴급입찰사유의 구체적 예시	□ 긴급입찰여부를 발주기 관이 스스로 판단	□ 법령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시 긴급 입찰 가능 ○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15.6.22)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재해예방·복구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044-215- 5216)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긴급입찰사유 법령화로 자의적 입찰공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고기간 단축 제한 보도자료	
2. 소액물품제조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 변경	□ 최저가낙찰제	□ 적격심사제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국가계약법 시행령 ('15.6.22)
		긴급입찰사유 법령화로 자의적 입찰공 고기간 단축 제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044-215- 5216)
3. 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 상한율 상향	□모든 서비스의 일반관리 비율 상한율 : 5%	□ 6개 서비스분야별 일반관리비율 규정 (5~10%)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15.6.30)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긴급입찰사유 법령화로 자의적 입찰공 고기간 단축 제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044-215- 5216)
	산업통	상자원부	
지식산업센터 인정 요건 완화	□ 지식산업센터로 인정받 기 위해서는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어 야 함	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및 공장설립에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44-203- 4431)
[<u>]</u> 정기심사	□ 정기심사시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받도록 함	□ 정기심사시 제품심사 폐지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15. 7월)
		시행령	산업통상 자원부 표준정책과

구 분	<u> </u>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043-870- 5348)
] 품질교육 기수시간	□ 20시간	□ 16시간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15. 7월)
			시행성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과 (043-870- 5348)
① 법정인증간 시험결과의 상 의무화		신설	□ 기존 인증제도의 제품평가 성적서 를 제출할 경우 동일한 시험기준 또는 상위 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결	국가표준 기본법 ('15.7.1)
			과에 대한 상호인정을 의무화하여 해당 시험을 생략	인증산업진흥과 (043-870-5507)
] 건축물 공사시 공사계획 통보	신설	□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증축·개축 등의 공사 시 공 사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 시작 7일 전까지 공사계획을	도시가스사업법 ('14.12.30)
<u>o</u>	의무화		통보하도록 의무화 ☞ (참고)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예산법 령〉최근개정법령/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2)
고] 건축물 공사시	신설	□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도시가스사업법 ('14.12.30)
인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조치 의무화		대하여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참고)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예산법 령)최근개정법령/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2)
- <u>-</u>] 건축물 공사시 공사계획 통보 및	신설	건축물 공사시 도시가스사업자 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아니 한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에게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시가스사업법 ('14.12.3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안전조치 미이행자 에 대해 과태료 부과		○ 건축물 공사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건 축물 공사의 시행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예산법 령)최근개정법령/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특	허청			
[1] 공지 예외주장 보완 제도 도입 원할출원 가능 기간 확대	o 출원 시에만 가능 o 등록결정 후 불가능	① (원칙)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 취지기재, 30일 이내 증명 서류 제출 ② (예외) 명세서 보정 가능 기간 및 설정등록 이전(최대 3개월)까지 보완 가능(설정등록 이후에는 불가) 『(참고)특허청 홈페이지〉정보마당〉뉴스및 공지〉KIPO News〉2015년 지식재산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① (원칙) 특허등록결정 등본 송달받은 날부터 설정등록 이전(최대 3개월)까지 가능 ② (제한) 출원 계속 요건 → 설정등록일까지로 제한 『(참고)특허청 홈페이지〉정보마당〉뉴스및 공지〉KIPO News〉2015년 지식재산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특허법 ('15.7.29)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02-481 -5397) 특허법 ('15.7.29)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02-481 -5397)		
국세청					
1 취업 후 학자금 원천공제 1년분 선납제 도입	o 회사에서 원천공제하 는 방법만 허용	o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공제 하거나 1년분 원천공제 상환액 선납이 가능 ☞(참고)국세청 누리집〉국세청 뉴스〉보도 자료〉국세청,「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 별법」개정으로 상환편의 제공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15. 6월) 국세청 학자금상환과 (044-20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3873)
	2] 취업 후 학자금 신고납부	o 자영업자의 경우 신고 납부 방식으로 상환	o 국세청에서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고지한 금액을 납부만하는 방식으로 전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15. 6월)
	를 고지납부 로 전환		☞(참고)국세청 누리집〉국세청 뉴스〉보도 자료〉국세청,「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 별법」개정으로 상환편의 제공	국세청 학자금상환과 (044-204- 3873)
		관	세청	
□ 휴대품 등		o 세관장이 수기로 담		
부과 징수절	열자 개선	배소비세 납부서 작 성 발급	자체장이 담배소비세 부과결정 후 세관장이 납부서 출력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2)
		중소	기업청	
① 개인투자: 조합원 가입		□ 개인	□ 개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중소기 업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중	벤처기업법 ('15.11월)
			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고시하는 기관으로 확대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벤처기업육성 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042-481-4487)
11 1인 창조 지원대상 입 확대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 부동산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	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15. 8월)
			☞(참고)중소기업청 홈페이지)알림소식)보 도자료)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대폭 확대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042-481-4553)
	1] 소 공 인특 화지원센	□ '14년 8개소 시범운 영	□ 예산이 대폭 증액됨에 따라 18개 신규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업종 별 특화사업 지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터		(-1-) (-101-1 (101-1) (101-1)	('15.5월)
	설치·운 영		☞ (참고)중소기업청 홈페이지〉공고〉2015 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모집 공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481-8923)
	② 소공인 성장희망 사다리 지원	□ 미시행	□ 신규 예산 확보로 소공인 마케팅, 판로개척 분야 등을 지원 ☞ (참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2015년 소공인 맞춤형 성장 주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5.5월)
			당고/2013년 조승한 웃품형 영영 구원 기관 모집 공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481-8923)
		횐	경부	
① 시설물 : 담금 펴	환경개선 부 지	o 160㎡ 이상 시설물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o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 담금 폐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15. 7. 1)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044-201-6668)
① 먹는물 가(우리	수질기 준추 남)	ㅇ 미설정	∘ 먹는물(먹는샘물, 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먹는염지하수) 수질 기준 우라늄(30μg/L)항목 추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88)
① 수원지 · 기	세부주소 표	○ 수원지 시·군/리·동 까지 표기	 수원지 세부주소 표기(도로명, 건물번호 표시, 도로명 주소가 없는 경우 동/리, 지번까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15. 7.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88)
① 화학사고 이력정보 공개 추진	o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 등과 관련된 정	o 수집 정보에 화학사고 발생이력 정보 포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15. 7.21)
	보만 수집 o 화학물질 종합정보시 스템을 구축·운영	o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 축·운영 의무 명시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4)
① 비산배출 저갑제도 관리·감독 강화	 신고제 없음 정기점검, 시설관리기 준 준수 등 의무 규정 	 이 비산배출저감제도를 적용받는 업종 중 비산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에 대해신고제 적용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이 시설관리기준을 준수의무 부과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정기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등세부적 규정 정기점검 미이행: 300만원 이하 벌금 비산배출 사업장 시설개선 등조치명령 조항 신설 시설개선 등조치명령 미이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령 · 시행규칙 ('15. 7.21)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5)
① 측정결과의 공개	ㅇ 측정결과 공개 없음	굴뚝자동측정기기에서 측정되는 대기배출오염물질의 연간 배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출량 공개	('15.7.21)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7)
		7	상청	
순자외선자: 서비스 실		□ 총자외선지수 서비스	□ 순자외선지수 서비스 확대	('15. 11월) 기상청 기후변화감시센터 (070-7850-7103)
	기상자료개방포털 운영및 개방된자료형식서비스	□ 분산 서비스	□ 기 상 자 료 개 방 포 털 (data.kma.go.kr)을 운영하여 창구 일원화 - 지상, 해양, 고층 등 8종	11 1 - 1 /1
	② 기상 자료 Open-AP I 서비스 확대	□ 공공기관 사용자만 신 청 가능(6종)	□ 일반국민 모두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 또는 기상자료 개방포털(data.kma.go.kr)에서 제 공 신청 가능(15종)	고시
기「지진·기 화산의 관 경보에 관 법률」 전면	측 및 한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경보 및 그 기술에 대한 개발과 국외협력 등을 위한 근거법이 마 련됨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kr)〉정보공개〉법령정보〉지진·지진해 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	-0767)
① 취약계층 관리자 대상 문자서비스 한파특보까지 확대	□ 폭염특보 제공	ㅇ 한파특보 확대 제공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501)
[] 열대저압부 정보 대국민서비스 실시	□ 태풍정보(5일예보) 제공	□ 열대저압부 정보 추가 제공 「☞(참고)기상청 홈페이지〉행정과 정책〉보 도자료〉올여름 태풍 정보 서비스로 더욱 안전해진다	열대저압부 정보 대국민 서비스 ('15.05.01) 기상청 예보국 국가태풍센'터 (070-7850-6355)
	국토	교통부	
① 민간의 토지 등의 수용	ㅇ 고급골프장 등 제한없음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국토교통뉴 스>참고·해명자료)지역주도 개발사업을 위한「지역개발지원법」개정안, 국회통과	지역개발지원법 ('15. 7월, 잠정)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044-201-3665)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화학제품제조시설(석 유정제시설을 포함).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 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 시설은 제외.	을 포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종 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 처리,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	, , , , , , ,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화장품법」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 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 동·식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중류·추출·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대 -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사용하는 등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성유제조시설	Livin 1771
① 도시계획수립 시 재해 취약성 분석 의무화	도시계획수립 시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반영하도록 지침에만 명시	o 도시계획 수립의 기초조사로 재 해취약성 분석 포함	국토계획법 시행령 ('15. 7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0)
① 4.5톤 이상 화물차	ㅇ 이용불가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가능* 진입시 과적측정 하이패스 차로	한국도로공사 내부 지침 ('15. 8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하이패스 이용		이용, 출구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 도 이용가능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4766)
	② 화물차량 의 고속도로	ㅇ 규정없음	 도로법 시행령상 명시된 화물차의 경우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만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며, 위반시 처벌 	('15. 8월,
	진입시 지정차로 통과 의무화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044-201-3924)
	E 휴게시설 시설 설치	도로관리청별로 재량으로 설치 운영	 고속국도에 연결되는 휴게시설, 주차장,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화물휴게소에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의 무화 시행 	도로법시행령 ('15. 7월)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도로정³ 	색 아이디어		o 일반 국민들과 연구기관, 도로분	(044-201- 3923) -
플랫폼 구 공모전 개			야 실무자들의 다양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도로정책 에 반영하기 위해 아이디어 플랫 폼「상상대로(想像大路)」를 운영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 -3882)
			7.17까지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공모 전을 개최	
			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도로안전 높이기, 교통정체 개선, 도로소음 저감 등 도로와 관련된 모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등	
			☞ (참고) 아이디어 등록방법 등은 상상대 로(www.roadidea.or.kr) 누리집 참고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1 저가형	장애인	o 장애인 감면단말기 대	o 장애인 감면단말기 대당 10만원	관계 부서 -
	감면 단말기	당 17만원 보급	이하로 개발 및 보급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17)
□ 경량항공 보험가입	증명하는	o 보험가입 서류 제출시 기 불명확	o 경랑항공기 보험가입을 증명하 는 서류를 안전성인증 신청 시	항공법 시행규칙 ('15.8월)
시 서류 제출	시기 명확화		교통안전공단에 제출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항공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88)
		해양	수산부	
일선수협, 투명 경영	[]외부감사	ㅇ 필요시	o 의무화	수산업협동조합법 ('15. 8월)
기반마련			☞ (참고) 수산정책과 홈페이지〉소식바다〉보 도자료〉수협비리 근절 위한 수협법 개정 안 공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9)
	②일선수 협 감사	□조합원 중에서 2명 선출	o 2명 중 1명은 외부전문가로 선출	수산업협동조합법 ('15. 8월)
	선출		☞ (참고) 수산정책과 홈페이지〉소식바다〉보 도자료〉수협비리 근절 위한 수협법 개정 안 공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9)
수산업 · 어 촌 발전 기본법	①수산업 의 정의	□(수산업법) 어업 생산(1차 산업) 위주로 규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어업(소 금산업 포함), 어획물운반업, 수산 물가공업, 유통업 및 이들과 관련된	기본법
시행			산업으로 정의하여 1~3차 산업을 포괄하는 산업으로 규정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 보도자료〉「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②수산 통계조사	-	□수산업·어촌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수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15.12월)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 보도자료〉「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7)
	③수산업 지원 전담기관	-	□수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필요 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 운영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15.12월)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 〉보도자료〉「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7)
어업법인의 어 촌관 광후 추가	사업범위에 후양사업	ㅇ 불가	□ 어업법인은 기존의 사업이외에 어 촌관광휴양사업도 가능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통합검색)법	농어업경영체육성 및지원에 관한 법률 ('15. 7월)
			령바다〉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6)
어업법인의 등기시 지 통지의무 과태료 부	및 위반시	□ 없음	o 어업법인의 설립·변경등기 사 실을 일정기한내에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 며,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및지원에 관한
			부과됨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통합검색〉법 령바다〉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6)
면허어업권 ³ 신고의무		□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주소를 변경하려면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전입	수산업법 ('15. 9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변경 신고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 도자료〉수산업법개정 … 면허어업권자 주소변경 신고의무 규제 폐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2-200-5516)
불법어업행의 공급 중지	위자 면세유	o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어업정지 등의 처	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	농림특례규정 ('15. 7월)
		분을 받은 경우	을 받은 경우에도 포함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 도자료〉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면세유 공급 중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02-200-5563)
크루즈산업 위한 제도 시행		o 별개의 제도 없음	 크루즈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공유재산의 대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카지노업 허가 특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 8월)
			 해외 마케팅 지원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로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정책자료〉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20)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	선박 대여업	o 요트 렌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사 업, 유선업 등록 필요	5톤 이상 마리나선박 대상의 마리나선박 대여업 신설비상구조선 구비, 매표소·화장	마리나항만법, 동법 시행령 ('15. 7월)
박 보관 · 류업 신설에 따른 다양한 마리나 서비스업 활성화	신설	- 비상구조선 구비, 매표 소·화장실·승객대기 실 등의 요건 충족 필요 - 원칙적 주류 판매금 지, 영업구역 제한 등 의 규제사항 다수	실·승객대기실 등의 요건 제외 -주류 반입·판매, 별도 영업구 역 등의 제한 없음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 도자료〉마리나 항만법 개정(보도자료 게 시일은 변경될 수 있음)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044-200-525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2]마리나 선박 보관·계 류업 신설			동법 시행령
па се	从 亡 甘크 七기 구설	전 전 기기 → 제 8 기 8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 도자료〉마리나 항만법 개정(보도자료 게 시일은 변경될 수 있음)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044-200-5255)
선박 또는	□ 별도 법적 근거 부재	o 선박 및 보관·계류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이 용이한 -마리나시설에 대한 분양 및 회	마리나항만법, 동법 시행령 ('15. 7월)
마리나선 박 보관 · 계류시설 임대 가능		원 모집 가능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 도자료)마리나 항만법 개정(보도자료 게 시일은 변경될 수 있음)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044-200-5255)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시행		선령 25년	시행규칙 ('15. 7월) 해야스사브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 보도자료〉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의 차질 없는 이행	
연안여객 운송 사업의 민간 자율·경쟁 토대 마련	□ 수송수요기준에 따라 여 객운송사업 면허 □ 여객운송사업면허시 자 본금 규정 없음	업면허 □ 여객운송사업면허시 자본금 최하 2	해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5. 7월)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 보도자료〉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의 차질 없는 이행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 강화	이내 운항정지 또는 1년 이내 보조금 지급 정지	년 이내 보조금 지급 정지 o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 기	시행규칙 ('15. 7월)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 최근 3년	준 최근 5년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 보도자료〉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의 차질 없는 이행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2)
중대 해양사고 발생선박 정보공표	ㅇ 임의규정	o 중대 해양사고 발생선박 정보공 표 의무화	해사안전법 ('15. 12월)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 법령〉해사안전법 시행예정 법률안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 5820)
	보건	복지부	
①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허가 후 신의료기술평 가를 거쳐야만 요양급	받은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 가 1년간 유예되어 바로 임상현	
	여 신청 가능	장에서 사용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임상시험 거친 의료기기는 신의 료기술평가 유예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1)
② 요양급여·비급여 대상에 해당 여부 확 인	회 : 신의료기술평가시 평가 대상여부 회신(90 일 이내) 이 심평원 : 민원인이 문	 * (단순회신) 심평원이 30일 이내 회신 * (심층검토) 심평원 접수 → 신의 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 → 	관한 규칙,
	의시 개별 답변	심평원이 회신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보험급여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도자료〉임상시험 거친 의료기기는 신의 료기술평가 유예	
추가비용 징수 선택진 료 의사 지정 비율	병원별 80%	 병원별 67%으로 축소하되, 진료 과목별 최대 2/3(75%)까지 지정 * 진료과목별 최소 1/4의 인원은 비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15.9.1)
		선택 의사로 두도록 보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4, 2479)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 의무	50% 이상	70% 이상으로 확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9.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4, 2743)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운영	국고 지원 시범 사업	- 간호 인력 등 자격을 갖추어 신청 하는 모든 지방·중소병원에서	'15.1.1일~ 지속 시행
		- 건강보험 적용·본격 실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24)
어르신 틀나치과임플란 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만 75세 이상금속상 완전틀니 비급여	 만 70세 이상 금속상 완전틀니 급여 적용 ○ 금속상 완전틀니 급여 적용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금년 7월, 틀니, 치과임플란트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15.7.1.) 의료급여법 시행령, 고시 ('15.7.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4)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7)
① 고위험 임신부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경 감	○ 본인부담 20% (* 식대 : 50%)	고위험 임신부*로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본인부담 10% (* 식대: 5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고시 ('15.7.1.)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규정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1)
② 장애인보장구 본인 부담 경감	○ 본인부담 20%	○ 본인부담 10%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5.7.1.)
		도자료〉201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 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1)
③ 재가 호흡보조기 요 양비 적용	ㅇ 비급여	o 호흡보조기 임대비용을 건강보험 요양비에서 지원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시 ('15.11.예정)
		도자료〉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1)
④ 당뇨병환자 요양비 급여 대상 및 품목 확대	대상 : 제1형 당뇨병환자혈당측정검사지(4개/ 일)	 (대상 확대)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 포함 (품목 확대) 혈당측정검사지 이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시 (15.11.예정)
		소모품*에 대하여도 요양비 적용 * 확대 대상 품목 검토 중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5 장애인보장구 급여 품목 확대 및 기준금 액 인상		 ○ (품목 확대) 전동휠체어 특수콘트 롤러 등 ○ (기준금액 인상) 보청기 등 * 급여 확대 품목 및 기준금액 인상 대상 품목 검토 중 [조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시 ('15.11.예정)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1)
1.기초생활보장제도 맞 춤형 급여체계 개편	○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선정기준 (생계급여) 중위소득 28% 수준 (1,182,309원, 4인 기준)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수준 (1,689,013원, 4인 기준)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수준 (1,815,689원, 4인 기준)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수준 (2,111,267원, 4인 기준)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6월 부터 신청하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5.7월)
	○ 급여수준 : 최저생계비	○ 최저보장수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28% 수준 -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 (의료·교육급여) 현행과 동일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6월 부터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보장과 (044-202-3052)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노안장애인 등 취약가 구 423만원, 그 외 298만원 (수급자 1인, 부양의무 자 4인 기준)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485만원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기준)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6월 부터 신청하세요!	
Ⅱ 산모신생아 건강관	ㅇ 국민행복카드에 고운맘	ㅇ 국민행복카드에 "산모신생아 건	('15. 7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리사업, 국민행복카 드로 통합	카드, 맘편한카드, 아 이행복카드 기능 이용 가능	강관리지원 서비스" 추가 통합	
① 장애물없는 생활환 경 인증제도 법적근 거 마련 및 인증 의 무화(국가·지자체)	o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 (국토부지침)에 따라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공동주택에 대한 인증제가 시행중이었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 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개정 ('15. 1. 28)으로 BF인증제도 법적근거 마련 - 제10조의2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장애인등 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 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 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 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조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률시행 2015.7.29.] [법률 제13109 호, 2015.1.28., 일부개정]	편의증진법 시행령 ('15. 7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2-202-3304)
① 장애인자동차표지 명칭 변경 및 발급대 상 법적근거 마련(확 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 가능) (발급대상)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 변경 ○ (발급대상) 기존 발급대상에 아래 와 같이 대상자 확대 - 보행 장애인의 보호자, 재외동포 및 외국인(보행상 장애인) 그리 고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하는 법인・단체와 시설 등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15. 7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2-202-330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 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5.4.14.)	
② 주차표지 부정사용 시 회수·재발급을 제한 규정 신설 및 주차방해행위 기준		 ○ (신설) 1차~3차 적발 시 ① 주차표지 대여・양도 - 6개월~2년 사용정지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경고~1년 사용정지 ③ 주차표지 위・변조 - 6개월~2년 사용정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15. 7월)
마련·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2-202-3304)
		○ (신설) 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주차하기 위한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④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 과태료 50만원 부과 [조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15. 4. 14.)	
노인학대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27개소 운영	o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강원(원주), 대구지역 2개소 확충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현장조사 등 접근성 강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치때	광역치매센터 11개소	 광역치매센터 추가설치에 따라 지역사회의 치매관리사업 수행의 내실화 인식개선, 교육활동, 봉사활동 연계 등 수행 	지매관리법 제16조의 2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54)
① 보육비용 신청 정보 고지 제도	_	 호출생아에 대해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 서면 제공 보육서비스 미이용 영유아에 대해 매년 1월말 관련 정보 서면 제공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영유이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	영유아보육법 ('15. 9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3)
 ② 어린이집 CCTV 설 치 의무화	-	과(' 15.4.30)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정보〉입법예 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	영유아보육법 ('15.9월)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044-202-3593)
Ⅱ 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가입 당연적용			국민연금법 ('15.7.29.)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3)
② 연기연금의 선택권 확대	o 전액(100%) 연기만 가 능	○ 연금액의 50%~100% 연기 선택 가능	국민연금법 ('15. 7. 2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44-202-3639)
③ 소 득활동 에 따른 감 액방식 개선	ㅇ 연령에 따른 감액	o 소득 수준 별 감액	국민연금법 ('15. 7. 29.)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44-202-3639)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 자 예방접종	○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 실시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병·의원 에서도 무료접종 실시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터〉보도 자료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등 ('15.10~)
		시표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21)
	여성	가족부	
①양성평등 기본법 본격 시행	o 여성발전기본법 o (보호범위)모성권	o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o (보호범위)모·부성권 보장 o 양성평등실태조사 실시	양성평등 기본법 ('15.7.1)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02-2100-6149)
련시설 종 합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 전점검 실시 및 임의공개	, , , , , , , , , , , , , , , , , ,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15.8.4)
안전점검 결과 공개		☞ (참고) 여성가족부홈페이지〉뉴스·소식〉 보도자료〉 청소년수련시설 점검 결과 공 개 의무화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진흥과 (02-2100- 6253)

중남, 부산 등 총 8개 시·도) 경제활동 촉진발 (10.7.5) 생대 확대 생대 확대 생대 학대 생대 학대 생대 학대 생대 학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조님 확대 중남, 부산 등 총 8개 시·도) 경제활동 촉진반 (10.7.5) 경제활동 촉진반 (10.7.5) 경제활동 촉진반 (10.7.5) 경제활동 촉진반 (10.7.5) 성고 변도자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 10개소 보도자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 10개소 전략 전략 전략 전후 전후 전략 전후 전후 전략 전후 전후 전후 전략 전후 전략 전후 전후 전후 전략 전후 전략 전후				관계 부서
보도자료)여성새로일하기센터 10개소 신규 지정	로일하기			경제활동 촉진법
지도사・ 상담사 자격취득 요건 강화 - 금고 이상의 형을 선 고반고 그 집행이 끝 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람 - 청소년지도사・상담사 자격취소 임의적 자격 결격사유, 부정한 방법 으로 자격 취득 및 양 도 시 자격 취소가능 (재량) - 청소년지도사・상담사 자격검정 부정행위자는 3년간 자격검정 부정행위자는 3년간 자격검정 부정행위자는 3년간 자격검정 우시자격 정지(신설) - 해바라기센터 32개소 내실화 - (14) 32개소 → ('15) 34개소 개한 법률 ('15.2.3) - (14) 32개소 → ('15) 34개소 ※ '15년부터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 ('15.2.3) - (14) 32개소 → ('15) 34개소 ※ '15년부터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 ('15.2.3)			보도자료〉여성새로일하기센터 10개소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8)
지격취득 요건 강화	지도사・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청소년기본법('15.9.23)
결격사유, 부정한 방법	자격취득	고받고 그 집행이 끝 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강화) 아동학대죄,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집행 등이 끝난 날로부터 10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피해자 내실화(서울, 경북) - ('14) 32개소 → ('15) 34개소 ※ '15년부터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피해자보호 등어 관한 법률 ('15.2.3)		결격사유, 부정한 방법 으로 자격 취득 및 양 도 시 자격 취소가능	 - 격 결격사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및 양도 시 반드시 자격 취소(재량→강행, 변경) ○ 청소년지도사·상담사 부정행위 자 제재 - 자격검정 부정행위자는 3년간 	
기아동센터, 애마다기역상·아 전의정책과 동세터를 '해바라기세터'로 일 권의정책과	피해자	ㅇ 해바라기센터 32개소	(서울, 경북) - ('14) 32개소 → ('15) 34개소 ※ '15년부터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 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2.3)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고용	노동부	_ , , ,
1. 직장어린 중소기업 지		o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 50% 이상일 경우 중 소기업 기준으로 지원	○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중소 기업 사업주 50% 이상이면서 <u>중</u> 소기업 근로자 자녀수 50% 이상 <u>인 경우</u> 중소기업 기준으로 지원 ☞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 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5.7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4)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사업주 인센티브 강화	①육아휴 직급여 및 사업주 사후지급 비율 확대	 (육아휴직급여) 6개월 경과 후 지급비율 <u>15%</u> (사업주 지원금) 복귀 1개월 후 50%, 6개월 후 50% 	 ○ (육아휴직급여) 6개월 경과 후 지급비율 25% ○ (사업주 지원금) 허용시 1개월치 지급, 복귀 6개월 후 나머지 지급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 〉e 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15.7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8)
0-1	②대체인 력 지원요건 완화	(채용시점) 출산전후휴 가 또는 육아휴직 시 작 30일 전 이후	○ (채용시점)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 <u>60일 전 이후</u> ☞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 〉e 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15.7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8)
	③국가 · 공공 기관 육아휴직 과업조	○ 월 10/20만원 지급	o「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사업중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 폐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15.7월)
	사업주 지원금 폐지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 〉e 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8)
	④10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ㅇ 1인당 월 10만원	○ 1인당 월 5만원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 〉e 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고시 ('15.7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지원금 인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8)
	5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대기업 10만원 ∘ 중소기업 20만원	 대기업 20만원 중소기업 30만원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 〉e 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고시 ('15.7월)
	인상		Το Το Π-/ ΤΙΛΙΗ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8)
4.임금체불 근로자 지원강화	1 체당금지급 대상확 대	 사업주의 도산 파산선고의결정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	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등을 받은 경우에도 제당금 지급(지급 사유 추가)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15.7월)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e- 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일을 관둔 임금 체불근로자? 체당금을 신청하세 요!(2015.6.9.)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
	② 체불 청산 지원 중소 기업	o 융자 대상 -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o 융자대상 확대 -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도 포함	임금채권보장법 ('15.7월)
	중도 기급 사업주 융자 대상 확대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e- 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임금체불근로자 보호 위해 소액체당금 지급등 추진 (2014.11.4.)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
5.산업안전 보건 감독체계 개편	[]산업안 전보건 감독의 종류	정기감독수시감독특별감독	 정기감독(종전의 정기·수시감독 통합) 예방감독(신설) 기획감독(신설) 특별감독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산업안전보건) (^{15.7월})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근로감독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85)
	② 정기 감독 대상 - 산재 미보고	□ 신 설	o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으로 1회 이상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업장 → 사업장 정기감독 실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산업안전보건) ('15.7월)
	사업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85)
		통	·일부	
① 대북지원 요건	<u> </u>	련 북한 상대방과 안		통일부고시 ('15. 4월)
		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투명성을 확보 하고 있는 자		통일부 인도지원과 (02-2100- 5834
 미래행복 	ेह हु	제도 신설	제도 신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4. 11월 29일)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922)
		오	교부	
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 처리방식	목업무	2~3개월 소요(외교행낭 및 우편 송부)	□1~4일 소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신 설 및 전자적 송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5. 7. 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02-2100-8373)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0 2-3480-1487)
		국가	·보훈처	
	1] 수익 사업 운영 단체 확대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등 상 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 로 하는 단체와 대한민 국특수임무유공자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15.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5.8.4.) 국가보훈처 단체협력과 (044-202 -5474, 5477)
	2] 수익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신설	□ 일정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 □ 매년 정기감사 실시 ☞ (참고) 국가보훈처홈페이지〉정보마당〉법 령정보〉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15.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5.8.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가보훈처 단체협력과 (044-202 -5474)
	국	방부	
접경지역 생산 군납품목 지정 신청	신설	○ 시·군 접경지역 품목지정협의 회가 품목을 신청하고 광역 시· 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 회에서 지역 농축수산업에 적합 한 품목을 부대조달 책임부대장 의 검토를 받아 승인 ○ 군납조합(농·수협)은 접경지역 군부대가 위치한 시·군 지정품 목을 우선 군납하도록 함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납 고시 ('15. 7월)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5722)
원품사용업체 인증 및 우대	신설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 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 하는 업체가 군 급식 입찰 참가 시 우대	농축수산물 군납 고시 ('15. 7월)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5722)
병사 수신용 공용	신설	o 병영생활관 당 수신용 공용 휴대	-
휴대폰 지급		폰 1대씩 지원 (총 44,686대) ㅇ 휴대폰 통신요금 지원	국방부 정보통신 기반체계과 (02-748-5956)
부대관리 민간위탁	신설	o 비전투분야 민간위탁 확대	-
용역 확대		육군 22사단, 육군 28사단, 해병대 2사단(추가) 육군 5탄약창	국방부 건설관리과 (02-748-582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예비군 사격훈련 체계 개선	o 총기고정틀/안전고리 부대별 설치·운용	o 총기고정틀/안전고리 표준화	예비군 훈련 관련 지침 ('15.7)
	사격통제요원부대 연건에 따라 상이하게 운용	o 통일된 지침 마련	국방부 예비전력과
	○동원훈련 : 9발 ○향방훈련 : 6발	○동원훈련 : 10발 ○향방훈련 : 5발	(02-748-5245)
자율참여형 예비군 훈련 확대 시행	ㅇ 186개 부대	ㅇ전 부대(208개) 부대 확대 시행	예비군 훈련 관련 지침 ('15.7)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5)
	방위	사업청	
고방연구개발지식재산권에 대한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 법인 : 국가와 지식재산권 공동 소 유 가능 □ 기업 등 영리법인 : 실시권 허락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 ('15. 9월)
민간 권한 확대		(기술료 받지 않을 수 있음)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알림·소식〉 보도자료〉「방위사업법」개정(안) 국회 본 회의 통과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 (02-2079-6336)
②핵심기술연구개발	□ 연구개발의 경우, 경쟁계 약 원칙	□ 전문연구기관이 제기한 과제의 경 우, 해당 전문연구기관과 수의계약 에 의함.	방위사업법 시행령 ('15. 4월)
수의계약 절차 신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법 령)행정규칙)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 리 지침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 (02-2079- 6383)
③ 방산	□ 방산물자별로 수출허가	□모든 방산의 수출 허가기관은 방위	방위사업법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물자 수출 허가기관 일원화에 따른 민원 편의성 증진	기관 이원화 운영 (방위사업청 및 산업통상 자원부)	사업청장으로 일원화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 〉법령〉방위사업법령〉방위사업법·방위사업법 · 방위사업법시행규칙	('15. 9월) 방위사업청 품목심사담당관실 (02-2079- 6833)
0.2	병	!무청	
[] 병역의 무 기피자 인적사항	ㅇ 없음	o 국외불법체류자, 현역입영 등 병역기피자의 성명, 주소, 기피요지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	시행령
등의 공개		* 2015년 7월 1일 이후 기피자부 터 적용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뉴스마당〉보도 자료〉2015년도 달라지는 병무행정	병무청 병역조사과 (042-481- 2781)
② 예술 ·체육요 원	ㅇ 없음	아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등 대 상으로 공연, 강습, 교육 등 관련 분야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	시행령
특기활용 봉사활동 의무화		을 의무종사기간(34개월) 중 총 544시간 의무적 실시 * 2015년 7월 이후 편입자부터 적용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 3006)
		☞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뉴스마당〉보도 자료〉2015년도 달라지는 병무행정	
3 약학 대학 재학생	o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 연령 26세	에서 27세로 상향 조정	병역법시행령 (2015년 7월 부터)
입영연기 제한연령 상향		☞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뉴스마당〉보도 자료〉2015년도 달라지는 병무행정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 273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4 국내의 외국계 고등학교	o 없음	o 국내의 외국계 고등학교 재학생 에 대한 입영연기 허용	병역법시행령 (2015년 7월 부터)
재학생에 대한 입영연기 허용		☞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뉴스마당〉보도 자료〉2015년도 달라지는 병무행정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 2739)
	문화처	육관광부	
1 유원시설업안전관리자 안전교육실시의무	- -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의무화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실시의무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규정 교육을 받지 아니한 안전관리자(30만원)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사업자(50만원)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내용 및기간 규정(2년에 1회 이상, 1회 8시간 이상)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5. 8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044-203- 2839)
② 유기기구의안전성검사 결과를공개하도록 의무화	-	o 유원시설업자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기설·기구의 안 전성검사결과를 공개하도록 의 무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 ('15. 8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044-203- 2839)
[] 이동식 천막	-	o 이동식 천막 내 전기, 가스 등 일체 화기사용 금지, 야영장 내 LPG통 반입 금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5. 8월)
		☞ (참고) 문체부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료〉야영장통합안전기준마련으로 안전 사각지대해소	문체부 관광사업과 (044-203 -2840)
②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시설물(글램핑,카라반등)	-	○ 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유료로 제 공하는 야영용 시설물(글램핑, 카라반 등)은 소화기, 누전차단 기, 연기감지기 비치하고 천막 은 방영처리 의무화 (참고) 문체부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 료)야영장통합안전기준마련으로 안전 사각지대해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5. 8월) 문체부 관광사업과 (044-203 -2840)
고연장 등록 대상 확대	 객석 수 50석 또는 객석 바닥면적 50㎡ 이상 공연장	○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알림 · 소식〉보도자료〉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공연법 개정안」국회 통과	공연법 ('15. 11월)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44-203- 2737)
고 공연장 재해대처 계획 관리 강화	o 공연장 등록 시 신고, 갱신 의무 없음	○ 공연장 등록 시 신고 후 1년 단 위 갱신 의무화 ○ 지자체장 보완요구 가능 [57]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알림· 소식)보도자료)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공연법 개정안」국회 통과	공연법 ('15. 11월)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44-203- 2737)
③ 무대 시설 안전진단 대상 확대 및 강화	 무대 기계·기구 수에 따라 구분 40개 이상: 3년 주기 20개~40개: 5년 주기 20개 미만: 해당 없음 	안전점검 의무화	공연법 ('15. 1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44-203- 2737)
④ 안전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과태료 : 2천만원 이하	공연법 ('15. 11월)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44-203- 2737)
지 변칙강화 ①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계획수립· 시행	-	위한「공연법 개정안」국회 통과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5. 8월) 문체부 체육진흥과 (044-203- 3138)
① 여가에 관란 권리와 책무를 법률에 규정		 국민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을 권리와 이를 위한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가 증진 을 위한 정책 수립 책무 규정 	본법
②여가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 사업의 법적 근거		o 여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민의 여가 프로그램 및 정보의 개발·보급,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등을 위한 법적 근 거를 마련	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③ 여가활성화를위한 지원		o 국민들의 여가 환경을 위해 노 력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 원·시상	
	[] 전문인력 양성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등 등을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21 우수 공예품 지정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된 공예품 에 관하여 브랜드화 지원, 전시 지원, 투자알선, 해외진출지원, 국제협력지원 등 지원 	
	③ 공예 기술 개발 지원		 공예소재·재료 및 처리기법 등 공예품의 제작·창작에 필요한 공예기술 개발 전담 기관 지 정, 지원 가능 	문화체육 관광부 시각예술 디자인과 (044-203-2752)
1 지역관점설립	광협의회	-	o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근거 마련 (신설)	관광진흥법 ('15. 8월)
			o 협의회 업무 범위 및 경비 지원 근거 마련(신설)	문체부 관광정책과 (02-203- 2812)
미래창조과학부				
	퓨팅 서비스 정보 보호	-	- 침해사고, 정보유출, 일정기간 서 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게 통지 -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정보 제공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2015.9.28.)
			및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 금지 - 계약 종료, 서비스 종료시 정보 의 반환 및 파기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진흥과 (02-2110-184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	-	-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 연구개발, 중소기업 지원, 전문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2015.9.28.)
		인력 양성, 해외진출 및 세제지 원 등 -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진흥과 (02-2110-1841)
클라우드컴퓨팅의 이용, 보급 촉진	-	-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 - 전산시설 구비시 클라우드컴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2015.9.28.)
		팅 서비스 이용 가능 - 국가기관 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진흥과 (02-2110-1841)
①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신규)	□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수행 ^[27] (참고)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자료 실)2016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 성지침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 ('15. 3월)
		3·10	미래부 SW산업과 (02-2110- 1834)
① 소프트웨어 발주기술지원센터 개소	(신규)	□ 소프트웨어 발주기술지원서비스 제공	SW중심사회 실현전략 ('14.7)
			미래부 SW산업과 (02-2110- 1833)
Ⅱ SW중심대학 지원	□ 여러 사업에서 전공교육 개선, 산학협력 등 분야 별 대학SW교육 지원	□ 다양한 대학SW교육지원 내용들을 「SW중심대학」으로 통합 [☞(참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주	- ('15.7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요사업〉사업공고〉2015년 SW중심대학 모집 공고(안)(7월 중순 이후 확인 가능)	미래창조과학부 SW정책과 (02-2110-1813)
		방송통	·신위원회	
[1 진입 규제 완화			
			☞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 당〉보도자료〉위치기반서비스사업 진입규 제 완화 및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가 족관계 확인 절차 간소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2110-1523)
[기 고계 확인절차 간소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팩스로 제출 혹은 방문 제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 8월)
			☞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 당〉보도자료〉위치기반서비스사업 진입규 제 완화 및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가 족관계 확인 절차 간소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2110-1523)
1 개인정보 단축	. 유효기간	□3년	□1년으로 단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15. 8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2110-1521)
제공에 동의	의하지 않은	□1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정보통신망법 ('15. 12월)
이용자에 더 서비스를 기 사업자에 더 상향	식부한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2110-152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림축	산식품부	_ " ' ' '
1. 농어촌 민박 조식 제고 허용 및 서비스·안전 교육	□ 신규	□ 조식 제공 허용 □ 숙박 및 식품 위생·소방안전 등 사업자 준수사항 마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15. 7월)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서비스·안전 교육 이수 의무화 [조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 장)법령정보) [농어촌정비법]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044-201-1590)
2.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 소득·재산수준 고려 없 이 정률지원(28%)	□ 소득·재산수준 등을 고려한 보험 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대상자의 95%는 현행과 동 일하게 보험료의 28% 정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상위 4%는 정액 지원 - 지원대상자의 최상위 1%는 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5. 8월)
		원 제외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 식)보도자료)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4)
3.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범위 확대	통원치료하는 농업인	□ 지원대상 질병 확대 : 암 포함 4 대 중증질환 포함 □ 지원 요건 완화 : 3개월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자까지 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시행지침 ('15. 8월)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 식)보도자료)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지원 범위 확대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4)
4. 국산 미곡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의 혼합	□ 혼합 시 혼합비율이 높 은 순서로 3개 국가까지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	□ 혼합 유통·판매 금지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 장)법령정보〉「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15. 7월 7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20)
5.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 혼합 시 원료 양곡의 수 확연도별로 혼합비율을 표시	□ 혼합 유통·판매 금지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 장)법령정보)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15. 7월 7일)
		경/합량정보/ 청국원니합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20)
6. 혼합 금지 위반시 제재	□ 신규	□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 영업소 정지 □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 장)법령정보〉「양곡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20)
7.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위반, 거짓·과대 표시 또는 광고만 신고포상금		양곡관리법 ('15. 7월 7일)
	지급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 장〉법령정보〉「양곡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20)
8.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제재	o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양곡관리법 ('15. 7월 7일)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 장〉법령정보〉「양곡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20)
9. 농업 난방용 면세유종 변경(경유	□ 경유 포함	□ 경유 제외	농·축산·임·어 업용 기자재 및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제외)		☞(참고)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 식)보도자료)농업 난방용 면세유종 변경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15. 7월)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40)
10. 2015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 신규	 2015년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대상품목 지정 -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9개):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폐업지원금 대상품목(5개):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2015년 피해보전직접I직 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고시 ('15. 6월)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 식)공지·공고)2015년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대상품목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044-201-1720)
11. 콩·양파·포도 농업수입보장보험 판매	□ 신규	 콩·포도·양파 농업수입보장보 험 판매 개시 콩(6월), 포도·양파(11월) 	콩 · 포도 · 양파 농업수입보장보험 판매 ('15. 6월, 11월)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 식)보도자료)콩·양파·포도 농업수입보 장보험 판매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80)
12. 해외농업개발 사업자의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 신고 의무	□ 신고 제도 폐지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 장)법령정보〉「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협력법」	해외농업 · 산림자 원 개발협력법 ('15. 7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044-201-2040)
13. 해외농업·신림자원 개발 집합투자업자 인력요건	□ 투자운용인력 외에 추가 적 인력(2명이상) 확보	□ 인력 확보 규정 폐지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 장)법령정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해외농업 · 산림자 원 개발협력법 ('15. 7월)
		영/합영호/ 에파등합·전급시전 개글 협력법」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044-201-2040)
14. 농업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의 부기등기	□ 신규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 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 시 부기등기 도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 7월 7일)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 장〉법령정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1-1384)
15. 농식품·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개국	□ 신규	□ 농식품·중기전용 TV홈쇼핑 개국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	농식품·중소기업 전용홈쇼핑 개국 ('15.7월)
		식)보도자료)농식품·중소기업 전용 홈 쇼핑 개국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17)
	식품의	약품안전처	
□ 저위험 의료기기 위탁 인증・신고제	o 의료기기 허가·신고 업무는 정부에서 전담	허가하고 저위해도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15.7.29)
도입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서 인증·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정책과 (043-230 -0419)
① 주류제조업체	o 「주세법」시설기준 적	o 주류제조업체는 「식품위생법」에	식품위생법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안전관리 시설기준	용가능	서 정한 식품제조·가공업의 시	('15.7.1)
강화		설기준을 준수해야 함 ☞ (참고)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2.11.27)	식품의약품 안전처 주류안전 관리기획단 (043-719 -6052)
① 인체조직 안전관리 통합전산망 구축	□ 없음	□ 조직은행의 채취, 관리, 이식 등 전주기 프로세스를 통합전산망으 로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 관리과 (043-719 -3656)
① 식품이력 추적관리제도 대상 확대	○ 매출액 50억 이상인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 · 수입 · 가공 영업자 ○ 영업장면적 1,000㎡이상인 기타식 품판매영업자	 매출액 10억 이상 50억 미만인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 조·수입·가공 영업자, 영업장면적 500㎡이상 1,000㎡ 미만인 기타식품판매영업자 	식품위생법 ('15.12.1. 시행) 건강기능식품 에 관한 법률 ('15.12.1. 시행 예정)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043-719 -2855)
	신	림청	
[1] 목재	∘ KS표준 업무를 산업통	□ 목재·제지 산업분야 KS표준 업	산업표준화법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제지 산업분야	상자원부에서 통합 관리	- 목재, 건축재료, 목공기계, 펄	시행령 ('15.7.29)
KS표준 업무 산림청		프·제지 등 430개 KS표준과 27개 품목 KS 인증	산림청 목재산업과
이관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산업표준화법 시행령	(042-481- 4291)
② 연접 개발 제한 폐지	250미터 이내 산지전 용면적은 3만 제곱미 터 이내로 한정	허가지의 면적을 포함하여 3만 제곱미터 이상도 가능하도록 연	산지관리법 시행령 ('15.9.29)
		접제한 규정 폐지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 보〉입법 및 행정예고〉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 4142)
③ 임업 용산지에 서의	 산림레포츠시설 및 숲속야영장 시설 불가능 가축의 방목만 허용	따른 산림레포츠시설 및 숲속야 영장의 설치 허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15.9.29)
행위제한 완화		가축의 방목과 더불어 방목지내 에서의 목초종자 파종행위 허용	산림청 산지관리과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 보〉입법 및 행정예고〉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42-481- 4142)
④ 무단 점유 국유림에	□ 신설	□ 임시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10년 이상계속 무단 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관리에 관한 법률
관한 임시 특례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 필요가 없 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한하여 국유림 대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4)
		☞(참고)국가법령정보센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정원 조성 및	o 신 설	□ 정원산업 육성 및 정원문화 진흥 을 위해 정원 정책 시행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진흥에 관한 제도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수목원 · 정원	관한 법률 ('15.7.21)
신설		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1-481-4248)
6 소나무 재선충병 관리강화	o 신설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에 대하여 국가 직접방 제 실시 	소나무재선충병방 제특별법 ('15.6.22)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설치 공무원 등이 타인의 토지사용・출입 및 사용 가능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시행과 위탁 또는 대행 제도 도입 모두베기 방제사업 시행 시 사유 입목 매수 제도 도입 부실시공자에 대한 벌칙 강화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도 도입 산지전용 시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 제출 의무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042-481- 4038)
	인시	·혁신처	
①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근로지원인 활용	-	o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 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활 용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국가공무원법(*15. 9.19)
		☞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뉴스/소식〉 보도자료〉장애인공무원 위한 맞춤형 지 원정책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2-2100-6957)
① 경력개방형 직위 지	o 개방형 직위는 공직 내·	o 개방형 직위의 일부를 민간인만	개방형 직위 및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정운영	외간 경쟁통해 임용	모집 대상으로 하는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운영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5. 7월 예정)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02-2100-6785)
② 국민인재 스카웃제 확대	o 고공단 '가'등급에 한 해 공모절차생략 및 면 접예외 가능	 공모절차 생략을 現 고공단 가등 급(실장급) → 과장급까지 확대 면접 예외를 現 고공단 가등급(실 장급) → 고공단 나등급까지 확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5. 7월 예정)
		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02-2100-6785)
	법	무부	
① 중소기업을 위한 간 이회생제도 도입	제1회 관계인 집회 의무간이조사위원 제도 부	o 제1회 관계인 집회 재량화 o 간이조사위원 제도 신설 o 채권자수 기준 회생계획안 의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5. 7월)
	존재 o 채권자수 기준 의결 요 건 없음	요건 추가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634)
기정폭력피해자에대한 신변안전조치실시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피해자를 보호시설 인도,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실시	벌등에관한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 3558)
① 항공기 외 경량항공 기 등 저당권 설정	∘ 항공법상 '항공기'에만 저당권 설정 가능	 경랑항공기와 비행선, 활공기, 항 공우주선에도 저당권 설정 가능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가능			민사집행법 ('15. 11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 -4262)
① 친권 정지 제도 도입	ㅇ 제도 없음	o 친권 정지 제도 도입 o 부모가 친권 남용 시 2년의 범위	민법 ('15. 10월)
		에서 친권 정지 가능	법무부
		☞ (참고) 법무부홈페이지〉보도자료〉아이들 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한 친권 정지·제 한 제도 도입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② 친권 제한 제도 도입	ㅇ 제도 없음	 친권 제한 제도 도입 부모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친권	민법 ('15. 10월)
		남용 시 특정 범위에 한정하여 친권 제한 가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참고) 법무부홈페이지)보도자료)아이들 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한 친권 정지·제 한 제도 도입	(02-2110-3164)
③ 친권자의 동의에 갈 음하는 재판	ㅇ 제도 없음	o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 을 통해 법원이 부모의 수혈 동	민법 ('15. 10월)
		의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 (참고) 법무부홈페이지)보도자료)아이들 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한 친권 정지·제한 제도 도입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④ 친권 상실 등 청구 권자 확대	○ 청구권자가 검사와 친족 으로 제한됨	o 친권 상실·정지 등 청구권자의 범위를 자녀 본인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까지 확대	민법 ('15. 10월)
		☞ (참고) 법무부홈페이지)보도자료)아이들 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한 친권 정지·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한 제도 도입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강력사범에 대한 경찰 과의 정보공유 강화	성보공유 강화 석방자의 보호관찰 종 동법 시 료사실 등 통보 근거 범죄를	동법 시행령을 각 개정하여 강력 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 관찰 종료사실 등 경찰 통보 규	
		정 등 마련 *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부 보호법제과 (02-2110- 3330)